V. 제1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봉기
- 2. 동학농민군의 격전

V. 제1차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농민전쟁은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이래 군·현 단위로 전개되어 온 반봉건 농민항쟁의 흐름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종합하여 봉건 모순의 척결을 촉구하는 한편, 개항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 모순을 극복하여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반제·반봉건 운동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은 대체로 네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제1단계는 '고부민란'의 단계이다. 고부에서 민란이 발발하여 농민 약 1천여 명이 고부관아를 습격한 1894년 1월 11일(양력 2월 17일)경부터 3월 3일(양력 4월 8일) 신임군수 朴源明의 설득으로 해산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제2단계는 '제1차 농민전쟁'의 단계이다. 3월 20일(양력 4월 25일) 무장에서 전라도일대의 농민들이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기포한 때부터 5월 7일(양력 6월 10일) 전주화약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제3단계는 '執綱所 시기'이다. 청군과 일본군의 침략으로 농민군이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한 5월 8일(양력 6월 11일)부터 9월 12일(양력 10월 10일)까지 농민군은 전라도 각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 통치를 실시하였다. 제4단계는 '제2차 농민전쟁'의 단계이다. 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재봉기한 9월 13일부터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패배한 1894년 말까지의 시기이다.

¹⁾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일조각, 1993).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연세대 박 사학위논문, 1991) 참조.

1) 고부민란

(1) 고부민란의 배경

동학농민전쟁의 발단은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민란이었다. 고부민란은 조선 후기의 여느 민란과 비슷한 원인과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지도자와 민중이 민란의 경험을 통해 과거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농민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부민란은 전라도 전역의 농민전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말기의 농촌은 수령의 수탈체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고부민란은 조선 후기 다른 고을의 민란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객관적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정치기강의 문란과 매관매직의 성행, 관리들의 극심한 부패에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다. 이러한 모순 구조 아래에서 어느 지역이나 할것 없이 계기만 주어지면 민란이 폭발할 구조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도는 삼남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을 가진 조선의 곡 창지대였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도 주로 전라도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궁방이나 관아에서도 조선왕조를 통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가장 많은 둔전이 있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궁방이나 관아에서 파견한 導掌이나 監官에 의한 조세 수탈과 탐학은 어느 지방에서보다도 더 혹심하여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했다.

고부는 미곡의 집산지로서 전라도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고을 중의 하나였다. 고부는 동진강을 끼고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연결하는 넓은 평야에 자리잡아 그 주변의 28개의 촌락을 거느린 곡창이었을 뿐 아니라, 이 고을을 둘러싸고 줄포, 염소, 동진, 사포 등 네 포구가 있어 여기서부터 원근 각처에 수출되는 미곡의 수량만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을 서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는 서해안의 줄포에는 捧稅漕倉이 있어 부안의 법성포와 더불어 稅米轉運의 중심지였다. 그런 만큼 고부군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그 수탈의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수령의 탐학이 심했다. 특히 古阜郡守 趙秉甲, 均田使 金昌錫, 轉運使 趙弼永의 수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여러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는 동안 탐학행위로 악명을 떨쳐 온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것은 1892년이었다. 조병갑은 1893년부터 탐학의 본색 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고부읍 북쪽 동진강 상류에 있던 萬石洑를, 아무 이상 도 없는데도 새로 수축하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징발하고 남의 산에서 수 백년 묵은 나무들을 마구 잘라 썼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 보의 수세로 논 한 마지기에 상답에는 米 2두. 하답에는 1두씩을 거두어 모두 700여석을 거두어 들였다. 또 조금 살만한 집을 골라 不孝니 淫行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죄목을 씌워 재물을 빼앗은 것이 2만냥에 달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추수할 때가 되면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갔다. 또한 대동미를 농민들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1결에 정백미 열여섯말에 해당 되는 돈을 받아 챙겼다가 정부에 바칠 때는 나쁜 쌀을 사서 갖다 바치고 나 머지는 모조리 자기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태 인군수를 지냈다고 하여 그 공을 기려 비각을 세운다면서 군민들에게 천여 냥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다.?)

均田使 金昌錫의 수탈도 고부군민들은 참기가 힘들었다. 호남의 연해 지방 은 18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매년 자연재해로 수확이 형편없었던 데다. 특히 1893년은 호남의 대부분 지역이 큰 가뭄으로 한 해 농사를 거의 망쳤다. 당 시 조선 정부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을 붙들어 매기 위해 균전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호남균전사 김창석은 농민들에 게 몇 년간 면세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묵은 땅을 개간하도록 하였으나 추 수를 하자마자 그 해부터 세금을 거둬 들였다. 이를 분하게 여긴 농민들이 이듬해에는 땅을 묵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김창석은 전년처럼 세금을 받아 챙겼다.3) 白地徵稅나 다름없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궁핍으로 생존을 위협받던 농민들의 저항을 더욱 부채질했다. 실제 봉기과정에서 재해를 많이 입은 군 북쪽의 면민들이 봉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은 우연만은 아니었다.

轉運使 趙弼永의 탐학도 여기에 뒤지지 않았다. 종래 조운과 선상에 의해 세곡을 나르다가 1886년부터 전운국을 설치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선박에 의

^{2) 〈}全琫準供草〉, 初招問目(《東學亂記錄》下, 國史編纂委員會, 1959), 522쪽,

³⁾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일조각, 1970), 252·255쪽.

한 세곡운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893년 공미 운수사업을 위해 이운사가 생기면서부터 선박 수선비 및 파손비 등 과외 세금을 거둠으로써 전운사 조필영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4) 조필영은 이에 불응하는 농민들을 붙잡아 고문했는데 수염을 뽑거나 상투를 매다는 악형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실제로 동학농민전쟁 단계에서 농민군들이 전운사에 대한 불만을 맨처음 적시한 것을 보면, 신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지른 전운사의 탐학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운 문제는 일 개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 각 군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3년 11월에 '沙鉢通文'이 돌자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낫네 낫서 난리가 낫서", "에이 참 잘되얏지 그양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사람이나 어대 나머 잇겟나"하며 민란이 나기를 기다릴 정도였다.5) 이처럼 동학농민전쟁 전야의 고부에서는 민란이 폭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2) '사발통문' 거사계획

고부민란을 동학농민전쟁의 전주곡으로 규정짓기 위해서는 민란이 농민전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는 고부민란을 이끌고 그것을 농민전쟁으로 전화시킨 전봉준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세상을 건지기 위해' 동학에 가담한 전봉준은 보은집회·삼례집회 등의 교조신원운동 때부터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봉건적 폐정을 개혁하려는 정치운동을 일찌기 구상하고 있었다. 1893년 보은취회 당시 금구취당의 독자적인세력으로 활동한 것이나 서울에서의 방문 게시 활동과 같은 것이 그러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6 고부민란과 관련하여 전봉준의 이러한 활동의 단면을 보여 주는 자료가 '沙鉢通文'이라고 생각된다.

1968년에 고부 송준섭씨 집 마루 밑에 묻혀 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어

⁴⁾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관련하여-〉(《아세아연구》7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32쪽.

^{5) 〈}전봉준자료집〉 沙鉢通文(《나라사랑》15, 1974, 외솔회), 134쪽.

⁶⁾ 정창렬, 〈고부민란의 연구(상)〉(《한국사연구》 48집, 한국사연구회, 1985) 참조.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우선 '사발통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사십일월 일 (가) 癸巳十一月 日 국이이집중 좌하 各里里執綱 座下

 左인
 선후책
 토의결정
 위
 고부 서부면 죽순이

 (다) 이색에 道人드른 先後策을 討議決定す기 爲すぐ 古阜 西部面 竹山里 송두호フ 도소 정 고 민일 운집 추서 결정 결의 宋斗浩家에 都所를 定す고 毎日 雲集すぐ 次序를 決定す니 그 決議된 내용 좌 여 內容은 左와 如す
 本日 雲集すぐ 次序를 決定する はいます。

고부성 격판 군수 조병갑 효수 스

一. 古阜城을 擊破학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홀 事.

군기충 화약고 점영 스 - 軍哭會과 少藥庫를 上領호 東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홀 事.

군수 ㅇ유 인민 침어 롬이 격징 스

一. 郡守의게 阿諛호야 人民을 侵漁호 貪吏를 擊懲훌 事.

전주영 홈눅호고 경스 직형 스

一. 全州營을 陷落학고 京師로 直向홀 事.

우 여 결의 군략 능 서스 민활 영도**근** 右와 如히 決議フ 되고 ᄯ**르서 軍略에 能**호고 庶事에 敏活호 領導者될 장

將 … (이하 판독 불능)(가, 나, 다 번호는 필자가 첨부한 것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이 자료가 1893년 11월 당시의 사발통문 원문 자체는 아니며, 사발통문에 참가한 어떤 동학교도의 후일의 간단한 회고록의 극히 일부를 필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7) 다만 (가)—(다)항이 어떤 시점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3개 항의 내용이 모두 1893년 11월의 정소운동을 위한 사발통문과 직결되는 사건이며 시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1월 말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임발령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보기도 하고,8) 1893년 11월에서 1894년 3월 무장기포 시기까지 4~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들을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9)

우선 (가)는 1893년 11월에 고부읍의 각 리 집강들에게 돌린 사발통문의일부임이 명백하다. 정작 통문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문서가 잘려 나가서 1893년 11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결의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서명자명단만이 실려 있다. (나)는 사발통문이 돌고 난 이후의 어느 시점에 민심의동향을 기록한 것으로서 (가) 이후의 일을 쓴 것인데 그 시기는 명확하지가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1893년 11월에 돌린 (가)의 사발통문에 대한 민중의반응을 적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00이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홋날 씌어진 점을 고려하여 1893년 11월부터 1894년 무장기포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 중에 어떤 격문이 있었고, 그 격문에 대한 민중의 반응을 적은 것이라는 해석11)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부분, 특히 4개항의 결의사항이다. 이 결의가 언제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일은 고부민란이 농민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창렬은 사발통문을 돌린 직후인 11월 말경에 전봉준 등이 결의한 것으로 본 반면에, 12) 신용하는

⁷⁾ 신용하, 〈고부민란의 사발통문〉(《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참조.

⁸⁾ 정창렬, 〈고부민란의 연구(하)〉(《한국사연구》49집, 1985), 101~105쪽.

⁹⁾ 신용하, 앞의 책, 124~127쪽.

¹⁰⁾ 정창렬, 앞의 글(하), 101쪽.

¹¹⁾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57쪽.

¹²⁾ 정창렬, 앞의 글(하), 99쪽.

결의사항 중의 2항과 4항은 고부민란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인 만큼 고부민란 단계가 아니라 전봉준이 무장에 남접도소를 차린 3월 중순경에 결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13) 그런데 고부민란과 농민전쟁의 연속성을 밝히려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다)의 '봉기계획'을 마련한 시점은 11월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등장을 올린 다음이 아니라 전주감영에까지 정소한 다음인 12월에서 1894년 1월 11일 고부민란 발발 사이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 전봉준 등 동학의 개혁세력은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부터 중앙권력의 교체를 목표로 운동을 전개해 온 연속선상에서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봉기계획이 구상되고 있었는데, 이 문건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결의사항 중의 제4항이 고부민란에서 당장 기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전국적 항쟁은 이 단계에서 이미 구상되어 있었으며, 고부민란은 그러한 구상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5) 이러한 주장은 고부민란의 전개과정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참여한지도부가 보인 움직임을 보면 다소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3) 고부민란의 전개

고부민란은 전봉준 등의 지도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민란의 발생 자체는 조선 후기의 일반 민란과 유사하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부민란은 조병갑의 학정에 "온 고을의 인민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에는 더 참을 수 없어서 起鬧하였던"16) 것이므로 애초에 그것은 고부 농민만의 행동이었다. 황현의 《梧下記聞》에서도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천 명이 모여서 진정호소하려 하였으나, 조병갑이 전주로 달아났다"17)고 하였다. 李復榮의 《南遊隨錄》에서는 "고부민들이 처음에는 소원하기 위해 관문 밖에 모였는데, 몇 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소문을 듣고 모인 자가 많아져 무리를 이루었으며, 전봉준이 거기에 뛰어들고 선동

¹³⁾ 신용하, 앞의 책, 124~126쪽.

¹⁴⁾ 배항섭. 앞의 글. 59쪽.

¹⁵⁾ 위의 글, 60쪽.

^{16) 〈}全琫準供草〉, 初招問目, 524\.

¹⁷⁾ 黄玹 著・김종익 譯, 《오하기문》(역사비평사, 1995), 69쪽.

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18)

다만 고부민란이 여느 민란과 달랐던 점은 자연발생적 민란에 전봉준이라는 지도자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점이다. 즉 고부민란은 조병갑에 대한 고부민의 원한이 자연발생적으로 민란 발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되고, 그에 따라 모여든 고부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하자, 앞의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를 기다리던 전봉준이, 준비가 미흡하였지만 고부민의 자연발생적 동요를 이용하여 거사를 일으키려 결심함으로써 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봉군은 중민이 글자깨나 알고 있는 자신을 추대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도자가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19) 그가 단순히 피동적으로 떠밀려서 민란의 주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전봉준은 민란 중민과는 달리 일찍부터 '濟世安民'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전봉준은 "너는 고부군수에게서 피해도 많지 않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민란을 일으켰는가?"하고 문자, "세상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갔으므로 개연히 한 번 세상을 건지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20) 즉 고부군수 조병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과 '세상'이라는 보다 열려진 의식지평이 지도자 전봉준에게 이미 획득되었기 때문에, 고부민란은 종래의 다른 민란과는 달리 농민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1894년 1월 11일 아침 일찍 말목장터에 모인 1천여 명의 민란 중민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두 대로 나누어 고부 관아를 향해 행진해 나갔다. 한대는 영원 운학동을 거쳐서, 다른 한 대는 천치재를 넘어서 고부관아에 들이닥쳐 고부관아를 힘들이지 않고 점령했다. 민란 중민의 습격을 눈치챈 조병갑은 단신으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담장을 넘어 재빨리 도망쳤다. 그는 입석리진선마을 부호 정참봉의 집에 숨었다가 변장을 하고 정읍, 순창을 거쳐 전주감영으로 허겁지겁 도망쳤던 것이다. 민중들은 이청의 아전들을 끌어내서 악정의 시말을 엄중하게 취조 처벌하고, 무기고를 부셔서 무기를 차지하고, 수세

¹⁸⁾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4월 9일자.

^{19)〈}全琫準供草〉,初招問目,525쪽.

^{20) 〈}全琫準供草〉, 再招問目, 534쪽.

로 거두어 들인 양곡 1,400여석을 몰수하고, 진전에서 거둔 세곡을 주인에게 돌려 주며, 만석보 밑에 새로 쌓은 둑을 허물었다. 그러는 동안 민란 중민은 읍내에 진을 치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웠다. 6일 뒤인 1월 17일에는 말목장터로 다시 진을 이동하였다. 이 때 노약자들은 모두 돌려 보내고 장정들만으로 민란군을 구성하였다. 일정한 지휘를 받는 농민군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고부민란의 양상은 처음부터 여느 민란과 다른 점이 많았다. "진영은 정숙하였고, 호령은 명석하여 여느 席旗軍(일본에서 농민들의 봉기시에 석기를 내세우고 일어난 데서 온 말) 같지가 않았다"거나, 조병갑을 쫓아낸 것이나다름없고, 관아를 점령하여 탐묵한 이서배를 징치하였으며, 창고를 헐어 곡식을 나누어 가지는 등, '난민'들로서는 요구하던 바를 일정하게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민란이 장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속된 것도 바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21)

그러나 민란이 전봉준의 뜻대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난민'과 거사계획을 사전에 가졌던 지도부 사이에 의식상의 차이가 있었고 사전에 조율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부와 민란 중민들 간의 갈등은 민란 초기부터 나타났다. 관아를 점령한 후 창고의 곡식을 헐어 나누 어 가지는 등 민란 중민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되자 중민들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²²⁾ 그러나 사전에 거사계획을 가지고 있던 지도부로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 전봉준은 해산하려는 민란 중민들에게 "너희들은 官米를 먹었으니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 함 께 살 길을 도모하자"고 하면서 위협 또는 설득을 통해 민란 중민들의 이탈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백산으로 진을 옮긴 뒤에 전봉준이 민란 중민들에게 "함열 조창에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정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군 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民擾가 월경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이유"였고, 민란 중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²³⁾ 민란 중민들의 대체적인 분

²¹⁾ 巴溪生, 〈古阜民擾日記〉(《주한일본공사관기록》1, 국사편찬위원회, 1986, 번역 본), 54쪽.

^{22) 《}南遊隨錄》, 갑오 4월 9일자.

위기는 일반적인 민란의 양상을 벗어나는 '반란'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란 중민과 지도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부와 민란 중민 간의 이러한 의식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봉준은 동장·집강 등의 향촌자치기구를 중간 매개기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들(전봉준 등)은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각 촌의 동장·집강 등으로 하여금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하였다.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에는 18개 區面의 동장·집강도 곧 같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백성들도 오활하게 퇴산하거나 혹은 싫증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단결도 일층 공고해지는 경향이 있었다."24) 그러나 끝내 지도부와 중민사이의 괴리는 해소되지 못하였고, 신임 고부군수로 부임한 朴源明의 효유로 민란 중민들은 해산하고 말았다.

고부민란이 전봉준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못한 데는 인근 고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고부읍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고부읍에서 시작하면 인근 고을에서 호응할 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봉준은 인근 고을 과의 연계를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고부민란의 발발이 사전에 인근 고을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호응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부민란의 발발은 거사계획을 가진 전봉준의 입장에서 볼 때 미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폭발한 것이었다. 민란의 폭발을 보고 전봉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와 민란 중민 사이에는 갈등이 노정되었고 이웃 고을의 호응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농민군은 관아에서 물러났지만, 해산하지 않고 말목장터를 거점으로 둔취하고 있었다.

(4) 관권의 대응

민란군이 고부읍을 점령하고 말목장터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²³⁾ 張奉善, 〈全琫準實記〉(《井邑郡誌》, 履露齊, 1937), 353쪽 ; 배항섭, 앞의 글, 67쪽. 24) 巴溪生, 앞의 글, 56쪽.

한 전라감사 김문현은 조병갑을 재부임시킨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이 두려워 중앙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은밀히 영병을 출동시켜 농민군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우선 김문현은 전주감영의 군위 정석진과 부하 10여 명을 말목장터 안의 농민군으로 가장하여 전봉준의 진영에 잠입시켜 내부 사정을 정탐케 했다. 정석진은 스스로 전봉준의 막사를 찾아 군민들의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병정들을 시켜 전봉준을 습격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꾀하였으나 도리어그 정체가 드러나서 정석진은 농민군의 죽창에 살해당하고 계획은 완전히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25)

2월 15일 김문현의 장계가 중앙에 보고되자 의정부는 조병갑의 仍任을 추천했던 김문현에게 越俸三等의 감봉처분을 내리고 조병갑을 잡아 들여 국문하기로 하였다. 이어 조병갑의 후임으로 용안현감이었던 朴源明을 신임 고부군수로 임명하고, 장흥부사 李容泰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민란을 조사·보고케 하고 읍폐의 교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신임군수 박원명은 온건무마책의 일환으로 전봉준의 민란군 부대에 글을 보내어 "새로이 명을 받고 이 지방에 도임한 뜻은 백성의 휴양에 전념하려는 것이며 지금부터는 卿 등의 일당과 이 지방의 施政을 의논하려고 하니 民軍 중에서 吏部 이하 중요한 자를 선발하라"26)고 하면서 민란군과 시정을 의논하고자 하였다. 또 "3월 3일에는 음식상을 크게 차려놓고 난민을 초대하여 조정에서 농민군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 농사짓고 편히 살 것을 허용하는 뜻으로 타일렀다. 난민은 모두 해산하였고 장두 전봉준 등 3인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27)고 하듯이 그의 온건무마책으로 3월 3일 무렵에는 민란 중민들은 해산하고 말았다. 민란 중민들은 전임군수가 수탈한 양곡도되돌려 받고, 군수도 원만한 인물로 교체되었으며 민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 해산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는 농민군의 주력이 해산하기를 기다리다 가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이용태는 2월 16일에 안핵사에 임명되었으나

²⁵⁾ 장봉선, 앞의 글, 383쪽.

²⁶⁾ 巴溪生, 앞의 글, 56쪽.

^{27) 《}오하기문》, 71쪽.

병을 핑계하여 시일만 끌다가 3월 2일에 역졸 8백여 명을 거느리고 고부에 난입하였다. 이용태는 "박원명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을 처리하였는데, 병갑을 두둔하면서 난민들은 반역의 죄목으로 몰아 넣어 죽이고자 하였으니,"28) "신임군수 박원명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민란 참가자와 그 괴수를 색출케 하였으며, 역졸은 온 고을에 퍼져 마을에 횡행하면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생선꿰미 같이 포박하니 온 고을 백성의 원한이 골수에 맺혔고",29) "기포 인민을 모두 동학이라 일컫고 이름을 열기하여 잡아 들이고 그 집을 불태웠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자를 잡아 들이고 살육을 감행하였다."30) 신임군수에 의해 거의 가라앉으려던 군민에게 안핵사 이용태의 포학은 보다 더 큰 불씨를 안겨준 꼴이었다. 이용태의 이러한 학정은 제1차 농민전쟁의 불을 지피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5) 고부민란의 농민전쟁으로의 발전

고부민란과 제1차 농민전쟁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부민란이 소강 상태로 들어간 이후 신임군수의 설득으로 민란 중민이 해산하는 동안 전봉준 을 위시한 지도부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군현 단위의 민란은 고립적으로 전개되다가 안핵사가 파견되어 민중을 기만적으로 설득하여 해산하면, 주모자를 색출하여 처벌함으로써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전쟁 지도부는 바로 이러한 실패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성찰했을 것이다. 한 고을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의 민란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고을을 묶는 조직세력이 없이 농민들의 단순한 집합만으로는 봉건정부가 기만책을 쓰는 경우에는 쉽게 해체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전봉준은 군현 단위의 산발적인 민란을 묶어낼 조직으로 동학조직에 주목했고 이러한 조직에 기초한 봉기만이 그 시대의 폐정을 개혁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28) 《}오하기문》, 71쪽.

²⁹⁾ 崔永年, 〈東徒問辨〉(《동학란기록》상), 157쪽.

^{30) 〈}全琫準供草〉, 初招問目, 526\.

전봉준은 소강상태에 빠진 민란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근 고을의 동지들을 설득, 규합하는 노력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 것이다. 《오하기문》에서는 "그리하여그 일당 金箕範・孫化中・崔景善 등과 함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준다는 꾀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끼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31)라고기록하고 있는데, 전봉준은 민란 중민이 해산하자 무장으로 잠행하여 전라도의 동학지도자 손화중・金開南・金德明・최경선 등과 모의하여 南接都所를차려 농민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민란이 소강상태에 빠진 2월부터 전라도 각지의 농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음력 2월에 이르러서는 '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펄럭이며 완전히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방 이웃이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다(그 수효가 1천 2, 3백 명이라고도 하고 8, 9백 명이라고도 한다)."32)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2월 22일 전라감사 김문현은 "다섯 개 진영과 금구·정읍·부안·김제·담양·무장·태인·홍덕 등 11개 고을에 군대를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라"33)고 할 정도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때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봉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격문을 띄운 점이다. 민중의 규모가 천 여명 정도의 세력으로 불어나자 전봉준은 그 여세를 몰아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거사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2월 20일경 '倡義檄文'을 날린 것이다.

백성을 지키고 길러야 할 지방관은 治民의 도를 모르고 돈벌이를 본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전운영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煩劇하여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초야의 遺民이지만 차마 나라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군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를 떨쳐 일어나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34)

^{31) 《}오하기문》, 72쪽.

^{32) 《}주한일본공사관기록》(번역본)1. 15쪽.

^{33) 《}오하기문》, 70~71쪽.

이 격문에서 전봉준은 전운영이라는, 일개 고을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여 민란의 확산을 꾀하고 있으며,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할 것과 '宗社를 보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과거의 민란과는 차원이 다른 전국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봉준은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 제4항 '전 주성을 함락하고, 京師로 직향할 사'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실상의 농민전쟁을 기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핵심적 내용이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나아가 중앙의 권신 제거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근본 취지는 제1차 농민전쟁 기간 중의 각종 창의문이나 통문 등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격문이 날아간 열흘 정도 뒤인 2월 말부터 고부 인근 고을에서 농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월 29일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에 동학이 둔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35) 3월 11, 12일경 동학당 약 3천여 명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이 태인에서 목격되기도 했다.36) 3월 16일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당산에 집결하기 시작하였고,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사방에서 농민군 천여 명이 몰려들어 영광・법성 경계에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 수백 명이 법성 진량면 황현리 대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총포 등을 마련했다.37)《오하기문》에도 "우도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과 '난민'이 함께 어우러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봉준 등은 무장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알렸는데…"38)라고 하여 고부인근 고을의 농민군들이 3월 초부터 집결하기 시작하여 무장에서 기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2월 20일 격문을 발한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라도 각지의 농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소강상태에 있던 고부민란은

^{34) 《}南遊隨錄》, 甲午 2월 20일.

^{3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8쪽.

³⁶⁾ 위의 책, 43쪽.

^{37) 《}南遊隨錄》, 甲午 3월 18일.

^{38) 《}오하기문》, 72쪽.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고부민란의 수습 과정에서 안핵사 이용태가 저지른 만행도 작용했겠지만,³⁹⁾ 그보다도 전봉준이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인근 고을의 농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고부민란의 처음 시작은 조선 후기의 여느 민란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나라를 건지려는 뜻을 가진 전봉준 등과 같은 지도자가 결합하여 고부민란은 한 차원 높은 농민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 전봉준의 기병과 격문

(1) 무장기포

제1차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3월 20일(일설 3월 21일) 무장에서 창의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⁰⁾ 2월 20일 각 고을에 농민전쟁을 촉구하는 격문을 띄운지 약 한 달만에 각지에서 모인 농민군이 결집하여 농민전쟁의 봉화를 올린 것이다.

전봉준이 무장에 잠행하여 동학의 도소를 설치한 것은 동학농민전쟁의 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학은 이미 충청도 보은에 최시형을 대접주로 하는 대도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동학의 조직체계로서는 각지의 包,接은 직접 이 대도소의 지휘를 받는 것이었지 따로 도소를 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은 호남의 동학을 공공연히 '南接'이라고 부름으로써 대도소(北接)에 대해 조직의 독자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이 독자적인 남접도소를 설치한 것은 동학 내부의 헤게모니 문제라기보다는, 동학의 조직과 활동을 종교의 범주에 한정시키고 싶어 하는 北接의제약과 간섭에서 벗어나서 동학의 조직과 활동을 종교의 범주를 벗어난 전체 국가와 사회의 개혁운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있다.41)

^{39) 〈}전봉준공초〉, 초초문목, 313쪽.

⁴⁰⁾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한국학보》40호, 1985).

⁴¹⁾ 위의 글, 123쪽.

무장 堂山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농민전쟁의 봉기를 알리는 창의문을 전국에 선포하고 통문을 전국에 발송하였는데 여기에서 농민전쟁의 목표를 천명하였다.

倡 義 文42)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은 人倫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이후에야 집과 국가에 無疆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은 仁孝慈愛하고 神明聖叡한지라, 賢良方正의 신하가 있어서 그 聰明을 도울지면 堯舜의 德化와 文景의 善治를 가히 써 바랄 수 있을지라.

그러나 오늘날의 신하된 자는 報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豫과 位만 도둑질하여 총명을 가리고 아부와 아침만을 일삼아 忠諫하는 선비를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匪徒라 하여 안으로는 輔國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虐民의 관리만 많도다. 人民의 마음은 날로 흐트러져 들어서는 즐거운 삶의 生業이 없고 나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이 없도다. 虐政은 날로 더해가고 怨聲은 그치지 아니하니 君臣의 義와 父子의 倫과 上下의 分이 드디어 다 무너지고 말았다. 管子가 가로되 四維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하였으니 오늘의 형세는 옛날의 그것보다 더 심하도다. 公卿부터 方伯守令까지 모두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자신의 살찜과 가문의 윤택의 계책만을 도둑질하며, 科擧의 문을 돈벌이의 길이라 생각하고 應試의 장소는 매매하는 저자로 변하고 말았도다. 허다한 돈과 뇌물은 國庫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私腹을 채우고 있도다. 국가에는 누적된 빚이 있으나 갚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과 더러운 일만을 거리낌없이 일삼으니, 八路는 魚肉이 되고 萬民은 도탄에 빠졌도다.

守宰의 食虐에 백성이 어찌 곤궁치 아니하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輔國安民의 방책은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鄕第를 설치하여 오직 제몸 하나 온전함의 방책만을 꾀하고 오직 豫과 位만을 도둑질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우리는 비록 草野의 遺民일지라도 君土를 먹고 君衣를 입고 사는 자이라, 어찌 국가의 危亡을 앉아서 보기만 하겠는가! 八路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

^{42) 〈}聚語〉(《東學亂記錄》上), 142~143쪽;〈東匪討錄〉(《韓國學報》제3집, 一志 社, 1976), 235쪽; 吳知泳,《東學史》(영창서관, 1940), 108~109쪽. 이 창의문은 종래에는 고부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홍덕, 고창을 거쳐 4월 9일 무장을 지나 면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신용하에 의해 3월 20일 농민군의 최초 봉기 때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하, 앞의 글 참조.

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輔國安民으로써 死生의 맹세를 하노니, 금일의 광경은 비록 놀랄만한 일이기는 하나 驚動하지 말고 각자 그 業을 편안 히 하여 昇平日月을 함께 빌고 임금의 덕화를 함께 입게 되기를 바라노라.

甲午 月 日

湖南倡義所

全琫準 孫和中 金開南

이 창의문에서는 기존의 유교적 윤리를 준거로 하여 양반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체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농민군 봉기의 정당성을 농민대중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전의 민란 단계에서 고을 수령이 주요 타격목표가 되었던 것에 비해 여기서는 '公卿부터 方伯守命까지'의 봉건통치층 전체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군이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선봉건체제 전체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輔國安民의 방책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제몸 하나 온전함의 방책만을 꾀한다'고하는 데에서 반제 민족주의 의식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창의문은 동학농민전쟁 최초의 창의문이기 때문에 아직 농민전쟁에의 호응도가 불확실한조건에서 일반 농민의 지지를 널리 구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반 농민들의 이데올로기적 인식정도를 의식하여 儒敎의 용어와 사상에근거하여 자신들이 국왕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임을 누누히강조하는 어조로 되어 있다.43) 즉 이 창의문에서는 농민군 지도부의 봉기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기 보다는 봉기의 대중적 지지를 겨냥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장에서 편성된 농민군의 수는 약 4천 명이었다. 이 외에 동학의 비밀조직을 통하여 태인접주 최경선이 3백여 명의 농민군을 조직해서 대기하도록 준비되었고 고부읍에서 1천여 명의 농민군이 동원되기로 되어 있었다. 전봉준이 단기간에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의 농민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었

⁴³⁾ 신용하, 앞의 글(1985), 126쪽.

던 것은 보은집회 시기의 남접의 금구취당 세력을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4) 황현은 무장 기포에 대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에 솔깃하여 우도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45)고 쓰고 있는데, 이로보아 茂長봉기에는 동학의 조직이 매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장기포 때의 농민군의 무기는 그동안 민란 때 관아의 군기고에서 빼앗은 무기와 민간의 무기로서 소총·화승총·창·칼·활·도끼·철퇴·죽창 등이었으나 잘 무장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 밖에 말목장터에 집합하기로 약속된 농민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말목장터 근방의 민가에 총창 수백 개를 은닉해 놓았다. 무장기포 때의 군량은 이 지방 부민에게서 징수하고 봉납케 하여 충당하였다. 군량 뿐만 아니라 짚신과 군용전도 징발했던 것으로보인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4천여 명의 농민군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으며 농민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2) 고부점령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東徒大將' 전봉준의 지휘와 손화중·김개남의 인솔 아래 농민군의 제1차 공격 목표로 미리 결정된 고부읍을 향해 3월 20 일 오후 사기 충천하여 진군을 시작하였다. 농민군이 맨처음 공격목표를 고 부로 택한 것은 안핵사 이용태 군에게 짓밟히고 있는 고부농민의 참상과 일 부 체포된 고부민란 주동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전주성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향"한다는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실행과정이기 도 하였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 4천여 명은 3월 20일 무장의 굴치를 넘어 홍덕을 거쳐서 고부로 전진하는 중에 태인접주 최경선이 인솔하는 농민군 3백여명의 합류를 받고 그날 밤 고부군 북면 말목장터에 도착하여 미리 연락을받고 대기하고 있던 고부 농민 약 1천여 명과 합류했다. 전봉준은 여기서 말

⁴⁴⁾ 정창렬, 앞의 글(상) 참조.

^{45) 《}오하기문》, 72쪽.

목장터 부근 마을의 민가에 준비해 감추어 두었던 총창 수백 개를 거두어들여 비무장의 농민들을 무장시켜 농민군에 편입한 다음, 계속 진군하여 그날 밤 고부읍의 북성안으로 들어서서 총을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고부군아를 향하여 야습을 감행하였다.

이 때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와 고부 관졸들은 처음에는 대항해 보려고 했으나 5천여 명의 사기충천한 농민군에 압도되어 이용태와 역졸들은 전주를 향하여 도망치고 座首와 吏屬들만 남아 있다가 대세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여 모두 나와서 농민군에 항복하였다. 농민군은 고부읍을 점령한 것이다.

고부읍을 점령한 농민군은 우선 옥문을 열어 고부민란으로 투옥된 주동자들과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 농민들을 석방하고, 군기고를 열어 총창과 탄약을 수습해서 농민군의 무기를 보충하고 읍내에 있는 청죽을 베어 죽창을 만들어 총없는 농민을 무장시키는 한편, 관속 중에서 안핵사 및 군수에 부화뇌동하고 탐학한 자 수 명을 색출하여 처형하고, 식량창고를 열어 빈민들을 구흌하고 고부읍의 폐정을 대략 정리하였다.

농민군이 고부읍을 점령하여 만 3일간 농민통치를 하는 사이에 무장기포때에 미리 조직화하여 창의를 통지해 둔 각지의 동학 두령들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읍에 도착하였다.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고부읍에 모인 농민군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46)

〈표〉 농민군의 고부점령 직후 고부에 모인 농민군

포 별	지 역 별 두 령	농민군수
손 화 중 포	고창두령 오하영, 오시영, 임형로, 임천서 등	1,500
	무장두령 송경찬, 강경중 등	1,300
	흥덕두령 고영숙 등	700
	정읍두령 손여옥, 차치구 등	1,200
김 개 남 포	태인두령 김낙삼, 김문행 등	1,300
김 덕 명 포	태인두령 최경선	
	김제두령 김봉년	2,000
	금구두령 김사엽, 김봉득, 유한필 등	
합 계		6,700

⁴⁶⁾ 吳知泳, 《東學史》(영창서관, 1940), 111쪽 참조.

위의 〈표〉를 보면 무장에서 봉기해 온 4천여 명을 빼고 고부에 도착한 농민군은 약 2,700명 정도였다. 여기에 고부에서 무장한 고부농민 1천여 명을 합하면 농민군 총 수는 7,700명까지 추산해 볼 수 있다. 농민군의 신분적 구성은 양인 노비 출신이 주를 이루었으며, 계급적으로는 주로 빈농 혹은 소작농이었다.47)

(3) 백산대회

무장 당산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고부읍을 점령하여 대강의 폐정을 개혁하고 대오를 강화한 다음, 3월 25일에는 백산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다. 백산은 광활한 호남평야 가운데 조그마하지만 우뚝 솟은 전술적 요충지였다. 이곳에 올라서면 사방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전봉준 등 지휘부는 농민군을 확대개편하고 이른바 대진군을 위한 전열체계를 갖추었다. 전봉준 등 지도부가 고부읍에서 백산으로 본진을 옮겼을 때 무장기포의 창의문과 통문을 보고 백산으로 몰려든 농민군들의 행렬은 줄줄이 이어졌다. 부안·태인·금구·원평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달려온 농민들은 이제 8천여 명에 이르렀고 지도부는 연합농민군을 재편성했다. 비로소 한 군 단위의 국지성을 벗어나 지방단위별로 본격적인 농민군이 조직된 것이다.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이 통솔하는 농민군이 무장 당산에서 기포하여 고부로 전진할 때 그 숫자는 4천여 명이었다. 여기에 전라도 각지에서 봉기하여 모인 농민군 부대와 태인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 3백여 명, 말목장터에서 대기중이던 고부 농민 1천여 명이 합류하여 농민군의 병력은 8천여 명에 달했다.

확대개편된 농민군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大將 全琫準 總管領 孫化中・金開男

⁴⁷⁾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62~84쪽.

總參謀 金德明·吳時泳領率長 崔景善秘書 宋熹玉·鄭伯賢

백산에서 농민군 지도부 구성은 무장에서 봉기할 때의 지도부체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지만, 고부읍을 점령할 즈음 합류한 접주급 지도자들을 지 도부에 흡수하여 조직을 확대, 직위를 배분함으로써 농민군의 지휘체계를 확 대 강화해 본격적인 진군체제를 갖춘 것이다.

농민군 지도부는 백산에 '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고 대장기에 무장기포 때의 동도대장 이외에 '保國安民'이란 네 글자를 크게 써 넣었으며, 격문을 공포해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에 띄워 백성들의 궐기를 촉구했다.

檄 文48)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磐石 위에다 두자 함이라. 안으로는 貪虐한 관리 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한 强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 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 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者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이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 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 月 日 湖南倡義大將所 在白山

무장기포의 창의문에서는 봉기가 국왕에 대한 반역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에 급급하여 봉기의 본 뜻을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유교의 용어로 분식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고부 점령에 성공하고 백산에서 1만여 명의 농민군을 편성하는 데 성공한 농민군 지도부는 위의 격문에서 거리낄 것 없는 자유로운 조건 위에서 대담하고 솔직하게 봉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 격문은 농민혁명 선언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1차 농민전쟁의 민

^{48)《}東學史》, 112쪽.

족주의의 반제 반봉건 투쟁의 목적을 극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즉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버히고", "창생을 도탄의 중에서 건지고"는 반봉건 투 쟁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 축하고자 함이다",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격문은 봉기의 주체세력을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봉기의 적대관계를 양반·부호 대 민중, 방백·수령 대 小吏의 대립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民과 三政운영에서 대립, 갈등관계에 있는 아전층까지 동맹군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농민군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농민군 봉기의 목표는 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하여 간부를 확대 개편한 후에 공포한 四大名義에서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형태로 선언되었다.

四大名義49)

- 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不殺人不殺物).
- ②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忠孝雙全濟世安民).
- ③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逐滅倭夷 澄淸 聖前).
- ④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驅兵入京 盡滅 權貴).

농민군이 발표한 4대명의는 농민군의 일종의 강령으로서, 여기서 전봉준이 오랫동안 소망해 오던 민비수구파정권의 타도와 일본침략세력의 추방 및 새로운 정치의 실현이 봉기의 목표로 공개리에 선포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①과 ②는 휴머니즘과 충효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민군 봉기의 보편적목표를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③은 개항후 국내에 침투한 일본제국주의세력을 쫓아내려는 선명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언이며, ④는 구체제의 골간인 민씨정권과 양반귀족을 타도하겠다는 반봉건 혁명의 선언이라고 해석된

⁴⁹⁾ 鄭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71), 74\.

다.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반제·반봉건의 근대민족주의 농민혁명이 선명하 게 공포되고 있는 것이다.50)

또한 농민군은 3월 29일에서 4월 4일 사이의 무렵에 행군의 '4개 약속'과 행동지침으로서 '12개조 기율'을 마련하였다.

4개 약속51)

- 1) 적을 대할 때는 언제나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는다.
- 2) 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 3) 행군할 때에는 언제나 절대로 남의 물건을 해쳐서는 안된다.
- 4) 효제충신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주위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농민군 지도부는 또한 농민군이 지켜야 할 기율로서 다음과 같은 '농민군 12개조 기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⁵²⁾

- 1.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降者愛待).
-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困者救濟).
- 3.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貪者逐之).
- 4.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복한다(順者敬服).
- 5. 도주하는 자는 쫒지 않는다(走者勿追).
- 6. 굶주린 자는 먹인다(飢者饋之).
-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奸猾息之).
- 8.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貧者賑恤).
-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不忠除之).
-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逆者曉諭).
- 11. 병든 자는 진찰하여 약을 준다(病者診藥).
- 12. 불효한 자는 형벌을 가한다(不孝刑之).

12개조의 기율은 충효제신 등 유교윤리적 덕목에 기초한 행동지침이었다.

⁵⁰⁾ 신용하, 앞의 글(1987), 71쪽.

⁵¹⁾ 金允植,《續陰時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71), 311쪽. 〈東厞討錄〉(《韓國學報》3), 244쪽.

^{52) 《}주한일본공사관기록》(번역본) 1, 19~29쪽.

이러한 농민군 기율은 농민군이 엄정한 규율과 기강을 갖고 행동하는 군대로 편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진군 당시에 농민군들은 실제로이러한 규율을 지켜 김윤식의 《續陰時史》에서도 "匪徒(농민군: 필자)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오히려 추호도 민을 범하지 않았고 관민들은 궤향을 즐겁게 제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백산대회에서 만들어진 격문, 행동강령, 기율 등을 종합해 볼 때 농민군은 이를 통해 혁명적 목적과 의지를 처음으로 명백하게, 또 구체적으로 밝히면 서 대의적 명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농민군은 이전의 민란 시기의 자연발생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 조직적인 투쟁의 대오를 갖추고 명확한 슬로건을 제시했다.

전봉준이 남접도소를 설치하여 농민전쟁의 총본부로 삼고 무장에서 창의 문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과거의 민란 형태의 자연발생성과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의 비약이 가능하였다. 민란 단 계의 농민봉기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일관하였다면, 이제 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뚜렷한 투쟁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적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고부민란을 포함한 종래의 민란과 농민전쟁을 결정적으로 구분지우 는 것이다. 즉 이제 농민군은 지방관리들의 학정에 대한 수동적인 저항의 차 원을 벗어나 국가권력을 투쟁의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조직적 형태를 꾸려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동학농민군의 격전

- 1) 관군의 남하와 황토현·장성전투
- (1) 농민군의 진군과 감영군의 출동

갑오년 3월 25일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농민군 부대는 정연한 기율

속에 백산에서 전주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전라감영 이 있는 전주성 점령이었다.

'保國安民'과 '東徒大將' 기를 앞세우고 그 뒤에 청·홍·묵·백·황의 오색기를 벌려 각기 방향을 표시했다. 포사의 어깨에는 弓乙을 붙이고 등에는 同心義盟 넉자를 붙였다. 전봉준 대장은 백립·백의 차림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으로는 '三七'주문을 외며 지휘했으며 대오는 삼삼오오 진법에 따라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53)

이즈음 각 고을의 관청은 자체방어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아전들의 상당수가 농민군에 투신했다. 농민군은 3월 28일 태인현 동헌과 내아를 점령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4월 1일 오전 10시경에는 금구현 원평까지 진출하였다.54)이들은 원평에서 진을 치고 하루를 묵으며 전주감영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무장을 강화하고 양식을 확보하는 등 전주성 입성 전략을 모색했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농민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수시로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감영군을 출동시킬 것을 결심한다. 우선 이서와 군교를 풀어 전주성의 서·남문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농민군을 제압할 감영군을 소집했다. 감영군의 주력은 1893년 설치된 武南營의 병력이었으며 각 고을에서 징병한 향병과 보부상들이 합세했다. 우영관 李璟鎬를 총지휘관으로 하여 영병 7백여 명, 토병 5백여 명, 보부상 1천여 명 등이 진압군으로 편성되었다.55) 이들은 4월 3일 오전 10시경 농민군의 진격을 막기위해 금구쪽으로 진출했다.

감영군의 출동소식을 접한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3일 오후 4시경에 재빨리 방향을 바꿔 태인현의 인곡·북촌·용산 등지로 진을 옮겨 버렸다.56)

한편 농민군의 일대는 백산에서 곧바로 부안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봉기한 세력과 하동면 분토동에서 합류했다. 이들은 약 5백명이었으며 홍·백의 '保國安民旗'와 부안·고부·영광·무장·홍덕·고창 등의 읍이름을 새긴 소

⁵³⁾ 崔琉鉉.《侍天敎歷史》.《東學思想資料集》3(아세아문화사. 1978). 616쪽.

^{54) 《}오하기문》, 75~76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쪽.

⁵⁵⁾ 鄭碩謨. 〈甲午略歷〉(《동학란기록》상), 63쪽.

⁵⁶⁾ 洪啓薰, 〈兩湖招討謄錄〉(《동학란기록》상), 163쪽; 《오하기문》, 78쪽.

기 등을 내걸고 행진했다. 부안으로 진출한 농민군 중 2백여 명은 4월 1일 부안 현아에 들이닥쳐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준 뒤 분토동으로 돌아 갔다. 이튿날 아침에는 부안 공형에게 '장시에 폐막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문 을 보냈으며 일부는 이날 오후 6시경에 분토동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진 서 도면 부흥역으로 진을 옮겼다.57)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4월 3일 밤을 태인에서 지낸 다음 일부 견제병력만을 현지에 남기고 부안으로 이동했다. 4일 오전에는 부안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 일대와 합세한 농민군 주력부대는 부안 동헌에 돌입하여 현감 李喆 제를 감금하고 아전들을 결박한 뒤 군기를 탈취했다.58) 또한 이날 영광 법성 포의 이향에게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내었다.59)

… 또 우리가 오늘 의거한 것은 위로 宗社를 보존하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죽음으로써 맹서하였으므로 두려워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살펴 보건대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들로서, 전운영이 吏民에게 폐단이된 것, 균전관이 폐단을 제거한다면서 폐단을 만드는 것, 각 시정에서 금전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는 것, 각 포구의 선주들이 강제로 빼앗는 것, 외국의潛商들이 고가로 사들이는 것, 염전에 대한 시장세, 여러 물품을 도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起田과 陳田을 막론하고 私田에 백지징세를 하는 것, 오래된환곡의 본전을 뽑는 것 등등 폐막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농공상의 네 가지 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 국가를돕고 아래로 빈사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濟衆義所

이 통문은 폐정개혁에 대한 농민군의 구체적인 요구조항들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영광 법성포 뿐 아니라 당시 농민군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고부·부안·흥덕·태인·정읍·장성·무장·함평 등의 수십 개 고을에 발송되었다고 생각된다.

^{57) 《}남유수록》, 甲午 4월 1일 ;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63쪽,

^{58) 《}남유수록》, 甲午 4월 5일 ;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63쪽.

^{59) 〈}동비토록〉(《한국학보》3, 一志社, 1976, 여름), 244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번역본)》1, 20쪽.

4월 6일 오전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부안을 떠나 고부를 향해 진군을 계속했다. 태인쪽의 잔여세력들도 진을 풀고 고부쪽으로 향했다. 이들의 합류목표지점은 도교산이었다.⁶⁰⁾ 도교산은 황토산이며, 황토산은 곧 황토현이다.

감영군은 농민군의 뒤를 쫓아 원평을 지나 백산쪽으로 진군해 왔다. 부안의 농민군을 압박해 가던 감영군은 6일 죽산쪽으로 진출해 있던 일대와 백산에서 합류하여 고부쪽으로 향한 농민군 주력을 추격했다. 감영군은 농민군을 추격하면서 연도에서 닥치는대로 노략질을 일삼아 백성들의 빈축을 샀다. 농민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黃玹은 관군과 농민군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관군은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향병과 영병이 뒤섞여 행군하였다. 행군을 하게 되면 연도에서 닥치는대로 노략질하였고, 점포를 망가뜨리고 상인들의 물건을 접탈하는가 하면, 마을로 가득 몰려가니 닭이나 개가 남아나는게 없었기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를 갈면서도 겁이나 피했다. (중략) 적(농민군-필자)은 관군의 소행과는 반대로 하기에 힘써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게 끔 명령을 내려 조금도 이를 어기지 않으면서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우며 행군하였다. 이때 관군이나 도적들 양 진영은 모두 양식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민간으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여 힘들게 옮겨와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적들의 진영에는 음식을 담은 광주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관군은 굶주린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61)

(2) 황토현전투

황토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4월 6일 오후부터였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은 최소 4천여 명이었다. 감영군은 무남영의 정예 병력 3백여명을 포함하여 도합 2천여 명이었다.

오후 4시경에 첫접전이 이루어졌다. 첫 접전은 일종의 탐색전이었는데 농민군은 짐짓 패한 척하며 황토현에서 후퇴하여 남쪽의 시루봉 자락으로 진을 돌렸다.

^{60)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63쪽.

^{61) 《}오하기문》, 79~80쪽.

감영군이 이를 추격하여 황토현에 이르렀을 무렵 날이 저물고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곳에서 숙영을 했다. 감영군은 이 일대의 지리에 전혀 생소했고 때마침 비가 그친지 얼마되지 않아 안개마저 자욱했다. 농민 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감영군은 소를 잡고 술까지 마셔가며 한가로운 저 녁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때를 기다리던 농민군은 4월 7일 새벽 4시경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관군의 진영을 일시에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오하기문》은 당시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 양쪽이 모두 병영을 점검하여 움직이지 않고 다 만 군호를 알리는 포성만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적(농민군) 진영은 조용해졌고 포성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관군은 의아스러워하며 소나무를 잘라 횃불을 만들 고 진영 가득히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붙이자 진중이 마치 대낮과 같았다. 그 러나 막사 밖으로는 연기가 자욱하였고 때마침 안개가 크게 끼어 사방을 분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콩 볶듯이 포성이 들리더니 포탄이 발 밑에 떨어지자 관구은 마치 삼이 쓰러지듯 엎어지고 자빠졌다. 적은 삼면을 포위하고 서쪽 한 방향만 열어 놓고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이 때 날 은 이미 훤하게 밝았고 안개도 걷혔으므로 적은 지방에서 모집된 병사로 흰 옷 을 입은 사람들은 뒤쫓지 않고 영병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보부상으로 붉은 도장을 찍은 것을 등에 붙인 사람들만 끝까지 따라잡아 어금니를 악물고 칼을 휘두르는 품이 마치 사적인 원수를 갚듯이 하였다. 또 산 아래 너른 들녘 에는 봄갈이를 끝내고 물을 받아 놓았는데 아득하니 넓었다. 패잔병들은 물을 보고 뛰어 들었지만 물이 깊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논물을 붉게 물들였다. 관군이 버린 군수물자가 도로에 가득하였다."62)

이날 전투에서 감영군은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영관 李昆陽·태인 보부상의 우두머리 劉秉直·서기 李敦昇 등이 모두 죽었고, 영관 이재섭·유수근·정창권·백낙유 등은 모두 도망쳤다. 관군의 참패였고 농민군의 첫 승리였다.

황토현 전투에서의 승리는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62) 《}오하기문》, 80쪽.

첫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쳐 농민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갔을 뿐아니라 봉기를 관망하던 일반 농민들이 봉기의 대열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황토현 전투 이후 전주성 점령에 이르기까지 농민군의 전력은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갔다.

(3) 경군의 남하와 농민군의 남행

한편 농민군의 무장기포와 백산대회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4월 2일 전라 감사 겸 壯衛營 정관령이던 洪啓薫을 兩湖招討使로 임명하고, 전라병사에 李文永을 임명하여 농민군의 진압에 나섰다. 장위영 군대는 외국인 교관에 의해 훈련되고 최신무기를 갖춘 정예부대였다.

홍계훈은 8백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6일 군산에 도착했다. 홍계훈 부대가 군산을 떠나 임피를 거쳐 전주에 도착한 것은 전주감영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에 참패를 당한 4월 7일이었다. (63) 초토사 홍계훈이 거느린 경군은 감영군이 농민군에 패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3백명이 도망해 버려 5~6백명만 남게 되었다. (64) 도망자 중 상당수가 농민군에 가담했다고 한다. 또한 "초토사는 출병하지 않고 전투도 하지 않았으며 土兵만 앞세웠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 (65)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관군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사기 또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농민군은 곧장 전주성으로 향하지 않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정읍·흥덕·고창·무장·영광·함평·장성 등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차례로 제압했다.⁶⁶⁾ 농민군이 전주성으로 북상하지 않고남행을 한 것은 농민군의 자체 세력을 강화하고 배후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로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었고 사기 또한 충천했지만, 농민군 토벌을 위해 파견된 감영 주둔 정부 정규군에 정공법으로 맞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63)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62쪽.

^{6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2쪽.

⁶⁵⁾ 위의 책, 23쪽.

⁶⁶⁾ 정읍에서 함평까지의 농민군의 행로는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66 ~170쪽 참조.

남하과정에서 농민군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을 대파함으로써 손쉽게 전주를 점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한 농민군은 곧바로 정읍으로 진출했다. 농민군은 정읍현을 습격하여 옥을 부수어 6명의 죄수를 풀어 주고 군기고를 열어 무장을 강화했다. 농민군은 또 아전들과 농민군 토벌에 앞장선 보부상들의 집을 불태웠다.

이날 저녁 10시께 고부 삼거리(현 정읍군 소성면 소재지)에서 잠을 잔 농민 군은 다음날 8일에는 홍덕으로 나아가 군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확보한 뒤다시 고창으로 진출했다. 고창읍에 들어간 농민군은 옥문을 깨어 7명의 죄수를 풀어 주고 군기를 탈취했다. 동헌을 파괴하고 인부를 빼앗으려 할 때 고창현감은 도주해 버렸다. 또한 고창 부호 殷大靜의 집을 부수고 불사른 농민군은 다음날인 9일 무장으로 나아갔다. 이 때 농민군의 수는 1만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농민군은 동헌과 공해를 부수고 갇혀 있던 40여 명의 죄수를 석방했으며 향임ㆍ이속들을 잡아 들였다. 농민군은 성을 둘러싸고 수시로 포를 쏘며 위세를 나타내는 한편 무장읍 외곽 여시메봉에 진을 쳤다.

3일 동안 무장에 주둔한 농민군은 12일 아침 영광으로 출발했다. 영광을 점령할 무렵 군수 민영수는 세미를 거두느라 법성포에 있다가 읍의 함락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도망했다. 농민군은 14일께 법성포의 전·후 산과 구곡산 등에 진을 치고 창과 칼을 들고 포를 쏘면서 법성포에 정박한 선박에 들어가 일본인과 선원들을 구타했다. 당시 법성포에는 조창이 있어 세곡을 나르기 위한 전운선의 출입이 잦았으며, 전운영의 횡포에 피해를 본 농민군들은 법성포의 전운선을 몰아내고 세곡 수송을 두절시켰다. 농민군은 4일 동안영광에 주둔하면서 "매일 진법을 조련하고 밤이면 경문을 송독하는"67) 등세력을 정비 강화했다.

4월 16일 농민군은 두 대로 내누어 3~4천명은 계속 영광에 머물고, 본대 인 6~7천명은 함평으로 남하했다. 농민군이 함평으로 진격할 때 이 지역 교 리·官奴사령·수성군 등 150여 명이 관문을 지키며 대항했으나 농민군의

^{6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쪽.

우세한 병력에 역부족이었다. 관속의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달아나 버렸다.

이에 앞서 농민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영광 각 면 사민 1백여명이 동헌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농민군은 "우리가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읍폐를 교정코자 왔는데 사민이 자진 수성하는 것을 보니 수령의 치적을 알겠다"(68)며 선화당에서 물러났다. 대신에 농민군은 공해에 머물며 부민과 공형을 잡아들여 곤장을 친 다음 쫓아버렸다.

농민군이 남행하여 전라도 전역을 석권하고 있는 동안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의 기세에 눌려 접전을 위한 추격을 하지 않고 전주성에 앉아 있으면서 병력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다. 농민군이 정읍·홍덕·고창을 거쳐 무장을 점령한 4월 9일 홍계훈은 농민군의 전주 진격을 막기위해 경병 160명과 향병 200명을 금구·태인으로 파병했다.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의 위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정부에 보고하고 淸兵의 借兵을건의하는 한편, 진압에 자신을 잃고 증원병을 요청했다. 홍계훈은 전주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농민군이 영광으로 진격한 이틀 뒤인 4월 14일에야 무장현근처에 일부 병력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그는 또 전라감사에게 영을 내려 향병을 동원시켜 순창—담양—광주—나주에 방어선을구축하도록 했다.69) 정부는 16일 총관령 산하 강화도 병정 4백명을 증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일부 증원군을 파병했다. 농민군이 무장에서 영광을 거쳐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18일에야 홍계훈은 직접 경군을 이끌고 전주를 출발하여 농민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70)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18일 나주 공형에게 대원군의 재집권과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통문을 보냈다.71)

우리들의 오늘의 의거는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함이라. 여러 읍을 거쳐 오면서 탐관을 정치하고 청렴한 관리를 표창하며, 읍폐와 민막을 바르게 개혁하며 전운영의 폐막을 영구히 혁파한 것이다. 임금의 명

^{68)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0쪽.

⁶⁹⁾ 위의 책, 195쪽.

⁷⁰⁾ 위의 책, 196쪽.

^{71) 《}오하기문》, 87쪽.

을 듣고 국태공을 받들어 국사를 감독하며, 난신에게 아첨하고 비루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려는 데 본래 뜻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官司들은 나 라의 형세와 백성들의 실정을 생각지 않고 각 읍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살육하기를 힘쓰니 이는 진실로 어떤 마음인가. 그 행한 바를 조사하여 마땅히 서로 만나 죄없는 이민을 가려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중 략) 이 같은 뜻을 판사에 곧바로 고해 각 읍의 모군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간 혀 있는 도인들을 바로 풀어 준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탐관을 정치하고 권귀를 몰아냄으로써 보국안민을 실현하겠다는 농민군의 목표를 여기에 담고 있다. 농민군은 이어 19일에도 경군을 끌고 내려온 초토 사 홍계훈에게 呈文을 띄었는데, 역시 폐정개혁을 통한 보국안민이 봉기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또 다음날인 19일에는 폐정개혁의 항목을 열거한 원정서를 초토사 홍계훈에게 보내었다.72) 원정서에서 열거한 지방관들의 탐학을 보면 1)軍錢은 아무때나 부과하고 2)환곡은 원본을 회수하고도 이자를 독촉하며 3)세미는 명목도 없이 징수하며 4)민가에 부과하는 각종 잡역은 나날이 늘어가고 5)인척에게 재물을 빼앗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6)轉營官은 실제보다 더 거두어들이면서 독촉이 심하고 7)균전관은 토지면적을 속여서 세금을 징수하고 8)각 관청의 구실아치들은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빼앗고 가혹하게 구는 것 등이다.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농민군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치고 온나라가 상의하여 위로는 국태공을 모시어 부자의 도리와 군신의 윤리를 온전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안정시켜 종묘사직을 온전히 보전하기"73)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4월 21일 경군이 영광에 도착할 무렵 전봉준은 홍계훈의 경군을 분산시킬 의도로 농민군을 나주와 장성으로 나누어 진격시켰다. 경군을 영광에 묶어 둘 정도의 부대를 나주로 보내는 한편, 본진은 장성쪽으로 향했다.74) 인천을 출발한 증원군 부대가 목포에 상륙하여 홍계훈의 경군과 함께 남북으로 협

^{72) 《}오하기문》, 88~89쪽.

^{73) 《}오하기문》, 89쪽.

^{7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0~31쪽.

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때문이었다. 보름여에 걸쳐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휩쓴 농민군의 군세는 이때쯤 크게 강화되어 있었다. 농민군의 수가 수천에서 수만으로 불어났고 탈취한 무기로 화력이 강화되었으며, 전술 또한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곧장 북상하지 않고 남행한 작전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장성에 도착한 농민군 본대는 월평 장터에서 쉬면서 삼봉 아래에 진을 쳤다. 함평에서 나주로 들어간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잇길로 빠져장성으로 들어가버린 농민군의 진로는 홍계훈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18일 전주를 출발한 홍계훈의 경군은 금구·태인·정읍·고창을 거쳐 21일에야 영광에 도착하여 농민군의 동향을 살폈다. 이 때 농민군은 함평에서 장성으로 이동한 뒤였다. 경군은 다음날 농민군을 쫒아 장성으로 향했다. 마침내 농민군과 경군 간에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4) 장성전투

영광·함평·무안을 거쳐 장성에 이르는 동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달려온 농민군은 마침내 뒤쫓아 내려온 홍계훈의 경군과 장성에서 만나접전을 벌였다. 이른바 장성 황룡촌 전투였다.

농민군이 장성 월평촌에 진을 친 이틀 후인 4월 23일 뒤따라 장성에 도착한 홍계훈은 대관 李學承·원세록·오건영에게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75) 선봉 이학승은 황룡강가에 집결하여 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농민군을 선공함으로써 전투의 포문을 열였다.76) 엉겁결에 공격을 받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농민군은 곧바로 삼봉에 올라가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농민군과 경군의 대접전이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주감영군과 전투를 해 본 적은 있으나 조선 최정 예부대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경군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쿠르프식 야 포, 회전식 기관총, 모제르식 소총 등의 최신장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각 고을을 점령하면서 지방군의 무기들을 접수하여 처음보다 무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경군의 무기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재래

^{75)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2쪽.

^{76) 《}오하기문》, 90쪽 ; 《동학사》, 122~123쪽.

식 무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성 황룡강의 지형 지세를 환하게 익혀 둔 농민군들은 삼봉의 정상에서 학 모양의 진을 치고 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포를 쏘아대는 관군 앞으로 장태가 수없이 굴러 내려갔다. 불을 뿜은 장태는 관군의 화력을 소모시켰고 이에 당황한 관군이 정신차릴 틈을 주지 않고 농민군은 장태 뒤에서 맹공격을 퍼부었다.

장성 전투에서 농민군의 무기로 특기할 만한 장태는 원래 닭을 키우는데 쓰이는 닭구장태 만드는 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농민군은 이 장태 안에다 짚을 넣어서 불을 붙인 뒤 수백 개를 경군 쪽으로 굴려 화력을 모두 소모시키고 그 뒤에 농민군들이 따라 붙어 경군에 접근하며서 공격했다. 《오하기문》에서는 장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적은 위에서 아래로 관군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홀연히 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밀고 나왔는데, 둥그스럼한 닭의 집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였다. 밖으로 창과 칼이 삐죽하게 꼽은 것이 고슴도치 같았고 아래에는 두 개의바퀴를 달아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관군은 총탄과 화살, 돌을 쏘았지만모두 대나무 통에 차단되어 버렸다. 적은 대나무 통 뒤에서 총을 쏘며 따라오다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초토군의 진영은 멀리서 빤히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못한 채, 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도록 방임하였다.77)

이미 죽음을 무릅쓴 농민군의 위세와 용기는 관군이 확보한 신식무기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경군은 영광쪽으로 길을 따라 퇴각하면서 신촌리 뒷산 까치골 능선에서 농민군과 마지막 접전을 벌였다.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경군 대관 이학승이 전사했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대관 이학승과 다수의 경군을 죽이고 대포 1문, 쿠르프식 기관포와 회전식 기관포 각 1문, 그리고 양총 다수를 노획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경군은 대관의 전사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여 영광쪽으로 도망쳤다. 평소 경군들에게 오합지졸의 무리로 인식되어 왔던 농민군은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용맹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군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었다. 이후 경군과 접전이 있을 때마다 농민

^{77) 《}오하기문》, 90쪽.

군의 용맹성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고 동학농민군은 信符를 지니고 있어 총탄을 맞지 않고, 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그들의 용감성은 전설화되기도 하였다.78)

장성 황룡촌 전투는 농민군과 정식훈련을 받은 정규군인 경군이 최초로 접전을 벌인 곳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함으로써 농민전쟁의 전 개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첫째는 왕이 파견한 경군을 이겨 내었다는 사실이 농민군의 의식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처 음 동학과 난민들이 어울릴 때는… 감히 드러내놓고 관군과 대적하지는 못 하였으며."79) 또 얼마 전 함평에서만 해도 농민군은 초토사 홍계훈 부대를 두고 "이 군대는 우리 主上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므로 貪官들의 兵 隊와 달라 결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싸움을 벌이면 우리들은 역적의 죄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80)라고 하여 아직 왕에 대해 직접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장성 전투를 통하여 이러한 의식 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 다. 장성전투 승리 이후 농민군은 "王師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멀 리 달려서 전주에 이르렀다."81) 둘째로 장성전투 직전에 전라도의 농민군이 합류하여 대농민군부대를 이룸으로써 거괴와 정예가 다 모인 강력한 농민군 부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연래의 목적이었던 전주점령 이 성사될 수 있었다.

황룡촌에서 경군 대관 이학승을 뉘이고 대승한 농민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기수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돌렸다. 갈재를 넘어 정읍·태인·금구·원 평을 내달았다. 농민군에게는 오로지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보국안 민의 의지와 확신이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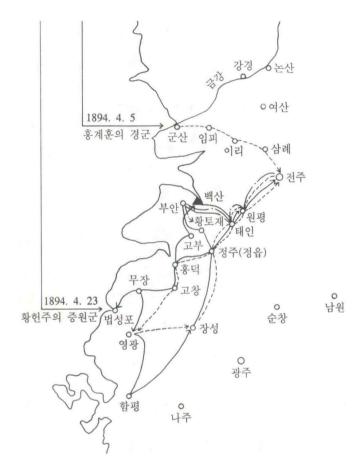
^{78) 《}동학사》. 122~123쪽.

^{79) 《}오하기문》, 92쪽.

^{8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5쪽.

^{81) 《}謙山遺稿》 19, 〈金城正義錄〉, 3쪽 ; 정창렬, 앞의 글, 156쪽.

제1차 농민전쟁 시기 농민군 및 감영군·경군의 진격로



농민군 진격로(----); 무장(3.20) → 고부(3.21) → 백산(3.25) → 태인(3.28) → 원평 (4.1) → 태인(4.3) → 부안(4.4) → 황토현(4.6) → 정주(4.7) → 흥덕(4.8) → 고창((4.8) → 무장(4.9) → 영광(4.12) → 함평(4.16) → 장성(4.21) → 황롱촌 전투(4.23) → 정주(4.24) → 태인(4.24) → 원평(4.25) → 전주(4.27)

감영군 진격로(-·-); 전주(4.3) → 원평(4.3) → 태인(4.4) → 부안(4.6) → 황토현 (4.6)

경군 진격로 (······); 군산(4.5) → 전주(4.7) → 원평(4.9) → 태인(4.18) → 정주(4.19) → 흥덕(4.20) → 고창(4.20) → 영광(4.21) → 장성 황룡촌(4.23) → 정주(4.26) → 태인(4.27) → 원평(4.27) → 전주(4.28) 4월 24일 창성을 출발한 농민군은 정읍을 거쳐 태인에서 하룻밤을 머문다음 25일 원평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때마침 관군을 위로하기 위해 내탕금일만냥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선전관 李周鎬와 수행원 두 명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왕의 윤음을 가지고 왔다가 장성에서 붙잡힌 초토영 종사관이학응・배은환 등과 함께 이들을 원평 장터에서 참수했다.82) 다음날인 26일 농민군은 경군이 뒤쫓아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내 전주부를향해 진격했다. 농민군은 원평에서 금구현아가 있는 금구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다. 농민군은 큰 길을 택하지 않고 다소 험하지만지름길인 독배재를 넘어 전주성의 코앞인 三川에 도착하여 26일밤을 보냈다. 삼천에 진을 친 농민군의 바로 앞에 전주부가 그들의 충천한 사기의 함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2) 전주성의 점령과 화약

(1) 전주성 점령

갑오년 4월 27일 아침이 밝았다. 삼천에서 하루밤을 묵은 1만여 명의 농민군은 전봉준 대장의 지휘 아래 아침 일찍부터 전주성 공략에 나섰다. 용머리 고개를 중심으로 진을 편 농민군은 성내외의 동정을 살피다 마침내 정오무렵부터 전주성 공격을 개시했다. 27일은 마침 서문 밖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동학사》는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장면을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다.

동학군은 장꾼들과 함께 섞여 이미 수천명이 시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때가 오시쯤에 이르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일성의 대포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판을 뒤덮자 장꾼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되어 서문과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바람에 동학군들은 이들과 섞여 문안으로 들어서며 함성을 내지르고 총질을 했다. 서문에서 파수보던 병정들은 도망질하기에 바빴다. 순식간에 성안에도 동학군 소리요, 성밖에도 또한 동학군의 소리다. 전대장은 유유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선화당에 자리하니…

^{82)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2쪽.

^{83) 《}동학사》, 123쪽.

이른바 무혈입성이었다.

사실상 전주성은 무방비 상태였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4월 18일자로 이미 파면되었고 '督判交涉通商事務'으로 있던 金鶴鎭이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었다. 감영의 군사들은 초토사 홍계훈 군에 배속되어 있었기에 전주성은 이미 무장해제 상황이나 다름 없었다.

농민군은 동문을 제외한 서·남·북문에서 공격했으며 장성전투에서 노획 환 대환포로 서문을 깨뜨렸다. 곧 성문이 열렸고 전봉준은 전라감사의 집무 실인 선화당을 접수했다.⁸⁴⁾

전라감사 김문현은 체통도 잊은 채 가마를 버리고 떨어진 옷과 짚신으로 변복한 뒤 동문을 빠져나가 공주까지 도주했다. 달아난 것은 김문현 뿐이 아니었다. 중영장 임태두, 판관 閔泳昇 등도 자신의 목숨 하나를 도모하는 데 바빴다.

경황중에도 조경묘 참봉 장효원은 慶基殿에 모셔져 있는 태조의 御影을 둘둘 말아 허리에 꽂고 조경묘에 있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李翰의 위패를 끌어안고 위봉산성을 행해 내달렸다. 홀로 달아나던 판관 민영승이 장참봉을 발견하고는 어영을 재빨리 넘겨받아 위봉사 대웅전에 모셨다.⁸⁵⁾ 성을 버렸다는 죄를 훗날 면제받고자 하는 영악함이었다.

선화당에 자리한 전봉준은 농민군의 대오를 정비하고 4문을 굳게 방비하는 한편 기강을 세우며 농민군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들은 성 안에서 검가와 검무를 즐겼으며, 옷감을 거두어 오랫동안 갈아 입지 못한 겨울옷을 벗고 여름옷을 새로 지어 입기도 했다.

한편 전봉준의 계략에 말려 5백여리를 뒤쫓아 다닌 홍계훈의 경병들은 전주성이 함락된 27일에야 뒤늦게 금구에 도착했다. 홍계훈은 장성 전투에서 선봉 이학성이 패배하고 농민군은 갈재를 넘어 정읍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영광에 머물러 있다가 25일에야 영광을 출발하여고창, 정읍을 거쳐 금구에 도착했던 것이다.86) 홍계훈은 금구에서 '전주성이비도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주성이 점령된 이유를 "감영부의

⁸⁴⁾ 이하 전주성 함락 상황은 《동학사》, 123~124쪽 참조.

^{85) 〈}양호초토등록〉, 《동학란기록》상, 173쪽.

⁸⁶⁾ 위의 책, 172쪽.

관속배 중 내응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87)이라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전주성 점령은 동학농민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최후의 승리이기도 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의 심장부였으며 호남일대의 으뜸가는 부였다. 따라서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중앙정부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전주감영의 점령은 곧 전라도의 장악을 의미했고 나아가 조정에 대한 실질적 도전을 뜻했다.

전주성 점령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4월 29일 긴급 대신회의가 고종의 주 재하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종은 淸兵借兵案을 제기하였다. 김병시 등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대신들은 '事勢가 부득이 하다'고 하여 동의하였다.⁸⁸⁾

(2) 완산전투

전주성을 점령함으로써 농민군은 1차목표를 달성했다. 무장기포 이후 한달여 남짓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잇따라 점령하여 치밀한 작전으로 관군을 유인한 뒤 전주성을 마침내 함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농민군은 그동안 유인작전으로 관군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으나 전주성 입성으로 관군과의 정면 전투가 불가피해졌다. 전주성을 놓고 농민군의 수성과관군의 공성으로 치루어진 완산전투는 향후 동학농민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농민군의 뒤를 쫓아온 홍계훈의 관군은 4월 28일 전주 용머리고개에 도착했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날이었다. 관군은 바로 완산에 진을 쳤다. 내칠봉, 외칠봉, 좌우칠봉의 삼면칠봉으로 이루어진 완산은 최고봉이 해발 186m밖에 안되지만 전주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주성 남쪽을 빙둘러 요소요소에 주력부대를 배치한 관군과 성을 차지한 농민군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함으로써 전주는 일촉즉발의 전운속에 휩싸였다.

수성과 공성의 입장이 바뀐 농민군과 관군의 완산전투는 관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홍계훈의 관군은 28일 전을 친 직후 곧바로 농민군이 주둔

⁸⁷⁾ 위의 책, 173쪽.

^{88) 〈}甲午實記〉(《동학란기록》상), 8쪽.

한 전주성을 향해 야포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농민군 수백 명이 성을 나와 동서로 완산칠봉을 오르려했으나 저지당했다.

이날 오전부터 날이 저물도록 양군 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전투 결과에 대해 홍계훈은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천보총을 쏠 수 있는 자 30인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적을 참획했다"⁽⁸⁹⁾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군 측에 다소 피해가 컸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관군이 성 안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서 경기전이 훼상했고⁽⁹⁰⁾ 성 안밖의 수천 호가 불에 탈 정도로⁽⁹¹⁾ 관군의 포격이 격심했다.

이후 며칠간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29일에는 농민군이 북문으로 나와 황학대를 공격할 때 관군이 회선포를 쏘아 농민군 수백 명이 사살당했다.92) 5월 1일에는 "적은 남문으로 대대가 떼거리로 몰려 나왔지만, 관군이 회선포를 발사하자 맥없이 흩어져 다시 달아났다. 이때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93) 2일에는 농민군이 서문쪽으로 몰려나와 용머리고개의 관군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관군이 또다시 대포를 계속하여 발사하자 다시 물러났다. 연이은 대포공격에 농민군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사활을 건 대접전은 5월 3일에 이루어졌다. 농민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문과 북문으로 진출해 사마교와 구근 하류를 건너유연대를 공격했다. 농민군의 위세에 눌린 유연대 주둔 관군은 남쪽으로 도주했고 이를 추격한 농민군은 일거에 다가산을 점령한 뒤 관군의 본영이 있던 완산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이날 농민군의 모습에 대해 《오하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94)

선봉에 선 이복룡은 커다란 깃발을 세우고 유연대를 거쳐 황학대를 지나 곧 바로 완산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마치 굴비를 꿰듯 한 줄로 늘어서서 진격하였 으므로 다만 좌우의 상황만 살필 수 있었을 뿐, 앞뒤의 상황은 알 수 없었다.

^{89)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3쪽.

^{90) 〈}全琫準供草〉, 初招問目(《동학란기록》하), 528쪽,

^{91) 〈}갑오약력〉(《동학란기록》상), 64쪽.

^{92)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3쪽.

^{93) 《}오하기문》, 99쪽.

^{94) 《}오하기문》, 100쪽.

이 때문에 앞에 가던 사람이 꼬꾸라져도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용기를 내어 봉우리를 기어 오르며 더욱 기세등등하였다. 계훈은 칼을 뽑아 손에들고 큰소리로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경병은 연달아 대포를 쏘았다.

설욕을 노리던 농민군은 이날 전투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전주성으로 다시 후퇴했다. 이날 전투에서 농민군은 전봉준이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고 소년장사 이복룡(당시 14세)과 용장 김순명을 잃었다. 그외에도 수백명의 농민군이 전사하고 농민군 전열이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55) 농민군 중에 도망자가 속출하고, 일부에서는 전봉준을 잡아 홍계훈에게 바치고 목숨을 빌어보자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날 전투를 끝으로 관군과 화약을 맺어 5월 8일 농민군이 자진해산할 때까지 더 이상의 전투는 없었다.

(3) 전주화약

5월 3일 대접전 이후 농민군의 동요가 있자 전봉준은 5월 4일 홍계훈에게 읍폐민막의 개혁을 위한 폐정개혁안이 포함된 所志를 제출하였다.96) 5월 5일 內署에서 홍계훈에게 보낸 전보에서는 "귀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기어이 소멸하도록 하라"97) 시달하였는데, 조정에서는 5월 5일 현재로서는 전봉준의 휴전제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생각된다. 5월 6일 오후 2시경에 전봉준의 使者 2명이 홍계훈에게 와서 다시 휴전을 제의하였다. 5월 7일에는 그사자가 일전에 소지한 바 민원을 상계하고 실시하면 해산하겠다는 供文(각서)을 제출하였다. 5월 5일 이후 조정에서는 논의를 거쳐 전봉준의 휴전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고종이 홍계훈에게 수락을 지시함으로써 5월 7일에 전주화약이 성립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실시하고 농민군은 전주에서 철수하기로 협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제1차 농민전쟁은 전주화약으로 종결되었다.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하여 서울로 진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군과 화약을 맺은 연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군이 농민군 토벌의 목

^{95)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4쪽.

⁹⁶⁾ 위의 책, 207쪽.

^{97) 〈}兩湖電記〉, 39쪽 ; 정창렬, 앞의 글, 160쪽.

표를 성취하지 않은 채 휴전에 합의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농민군과 정부군이 각각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농민군의 상황을 보자. 첫째로 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은 淸兵의 파병을 크게 의식했다. 조선정부가 4월 29일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조회문을 청국에 보내자 이를 기다리고 있던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5월 2일즉시 910명의 병력을 출발시키고, 뒤이어 1,500명의 병력을 출동시켰다. 이에 5월 5~7일에 걸쳐 2,500명의 청군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98) 농민군은 전주화약 후 5월 12일의 통문에서 "듣건대 청병은 3천명 뿐이라고 하는데 수만 명이라고 와전되었고 또 각군 군대가 길에 쫙 깔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잠시 퇴병하였다. 지금 들으니 그렇지 않아서 후회가 막급이다.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청병이 퇴거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기를 들 것이다"99)고 하였다.

둘째로 청・일 양군의 진주로 인한 국제분쟁의 확대와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전봉준은 휴전을 제의했다. 일본은 4월 30일 조선 조정이 청국에 청군의 차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수상 伊藤博文의주재하에 참모총장과 차장을 참석시킨 내각회의를 열어 조선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출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일본은 청국군이아산만에 상륙하기 전인 5월 6일부터 약 6,000명의 혼성 여단을 인천 부평지구에 상륙시키고 5월 10일에는 주조선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420명의 육전대와 20명의 순사에 대포 4문을 이끌고, 농민전쟁의 '진압'을 위해서 경군이 모두 남하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서울에 침입하였다.100) 일본군과 청국군 침입의 정보가 들어오자 그 이전까지 결사적으로 관군에 공격적이었던 농민군총대장 전봉준은 나라의 앞일을 염려하여 관군과의 화약을 모색하게 되었다.

세째로 戰勢上의 불리함과 농민군의 동요로 화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군은 무장기포 이후 승승장구, 승리의 쾌거로 이끌어왔던 전세와

⁹⁸⁾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 집강소의 설치〉(《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 조각, 1993), 163쪽.

^{9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쪽.

¹⁰⁰⁾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일조각, 1989), 16~17쪽.

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곳 전주성에서 맞고 있었다. 28일의 첫싸움에서부터 손실을 입은 농민군은 싸움을 걸기도 하고 선공을 당하기도 하면서 치러낸 싸움마다 전과보다는 피해를 거듭 입었다. 가뜩이나 열세 속에 놓여 있던 농민군 진영이 참패한 것은 5월 3일의 전투에서였다. 그간의 접전에서 관군의 신식무기를 제압한 농민군이었지만 이미 대포로 무장한 관군의 위력을 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전투마다 승리로 사기가 진작되어 있던 농민군에게 예상치 못한 전세가 펼쳐지자 농민군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큰 충격으로 동요가 일어났고 지도부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농심을 천심으로 알고 살아 온 농민군으로서는 농번기가 닥쳐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이 상황을 돌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네째로 제1차 농민전쟁과정에서 농민군은 폐정개혁안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휴전교섭 과정에서도 완강하게 요구하였는데, 이로 보아서 농민군은 위정 자들이 청일양국군의 침입으로 조성된 국가적 위기를 고려하여 농민군의 현실성있는 요구를 수락하여 폐정을 개혁하리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휴전화약을 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관군의 입장에서도 전주성 공방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관군의 병력만으로는 농민군의 진압이 힘들다고 판단한 조선정부는 淸兵의 차병을 요청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일본군이 제물포조약을 빙자하여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출병을 강행하려는 일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원세개에게 청국군의 상륙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군은 기민하게 5월 6일 이미 제물포를 통해 입경했고, 같은 시각에 청국군 또한 아산의 백석포에 상륙하여 정부는 곤경에처하게 되었다. 농민군의 위압적인 대세를 외세에 의존해 쉽게 해결하려했던 정부로서는 스스로의 계책에 옭아매인 셈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했다. 거기에다 전주성에서의 전투가 관군의 승리로 역전되자 당초의 원병 빌미가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청・일 병력의 출병은 빨리 들어내야 하는 화약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청일 양국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전주성을 되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조선정부는 화약 후 5월 10일에는 청국에, 5월 11일

에는 일본에 철병요구를 했다.101)

양측의 이러한 사정이 맞물려 협상이 시작되었다. 고종은 외국군, 특히 일본군 주둔의 빌미를 없애기 위해 신임 전라관찰사 김학진에게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전권을 주었고, 김학진은 농민군과 협상을 해서라도 전주성을 수복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성해야만 했다. 전봉준은 청일 양국에 군사주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화약을 맺되, 봉기의 시초부터 주장해 온폐정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27개조항으로 된 농민군 측의 요구를 김학진과 홍계훈이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자 5월 7일 '전주화약'이 비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홍계훈은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勿侵標를발급하였고 농민군은 5월 8일 전주성을 관군에게 비워주고 '귀화'라는 형식적 이름 하에 자진해산하였다.

제1차 동학농민전쟁은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고 농민군들이 일단 전주성에서 나와 해산하였으므로 막을 내렸다. 비록 농민군이 당초의 목표대로 서울로 직향하여 중앙권력을 변혁시키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관군을 격파하고 정부가 파견한 경군까지 곤경에 몰아 넣어 '폐정개혁'의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것은 어찌됐든 농민군으로서는 눈부신 성과임에 틀림없었다. 이는 과거의 민란에서 국지적으로 고립되어 안핵사에 의해 주모자가 체포되어 효수되고 민란군이 해산되는 것을 반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진전이었다. 이런점에서 전주화약은 성공적인 쾌거로 평가되고 있는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무엇을 목표로 싸웠는가? 농민군은 봉기의 시초부터 그들의 요구를 여러가지 형태로 제시해 왔다. 농민군은 창의 문, 격문 등을 통해 봉기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고 전쟁의 상대였던

¹⁰¹⁾ 위의 책, 29쪽.

조선정부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原情', '通文' 등의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부측에 제시한 농민군의 요구사항들은 일종의 폐정개혁안 내지 사회개혁안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여기서는 폐정개혁안의 분석을 통해 농민전쟁 당시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사회적 모순의 성격과 농민전쟁의 목표 내지 농민군의 사회경제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농민군이 제1차 농민전쟁 기간 중에 조목별로 제시한 폐정개혁 요구안 중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록은 모두 여섯 가지이다. 4월 4일 부안을 점령한 농민군이 법성포 이향에게 보낸 '東學軍通文' 9개조,102)4월 19일 경군을 이끌고내려온 招討使 홍계훈에게 제시한 '湖南儒生原情' 8개조,103)5월 초 전주화약직전 화약의 조건으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27개조 중 14개조,104)전주성에서 물러나와 5월 11일경 巡邊使 이원회에게 제시한 '全羅道儒生等原情' 14개조105)와 5월 17일경 '原情列錄追到者' 24개조,106)그리고 5월 20일 경 長城에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제시한 '개혁안' 13개조107)등이 그것이다.

물론 농민군은 농민전쟁을 일으킨 당초부터 체계적이고 상세한 폐정개혁 조목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군은 처음 봉기했을 때에는 간단한 구호

¹⁰²⁾ 이것은 농민군이 古阜 점령 당시에 法聖浦 東鄉에게 보낸 통문인데, 일본 상인 들이 공사관에 보낸 甲午년 4월의 정황보고 속에 들어 있다.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 20~21쪽; 伊藤博文,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秘書類纂刊行會, 1936), 332~333쪽.

^{103) 《}오하기문》, 88~89쪽 ; 〈東匪討錄〉, 353쪽.

¹⁰⁴⁾ 이것은 전주화약 때에 招討使 洪啓薰에게 제시한 것으로 모두 27개조로 되어 있었는데 전봉준 판결문에는 14개조만이 실려 있다.〈全琫準判決宣言書〉,《韓國學報》39집, 1985, 188~189쪽.

¹⁰⁵⁾ 이것은 전라도 儒生등(농민군)이 巡邊使 李元會에게 폐정개혁을 原情한 것으로 다음의 '原情列錄追到者'와 함께 실려 있다. 金允植,《續陰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71), 322~323쪽.

^{106) 〈}東匪討錄〉,《韓國學報》3집, 264쪽; 金允植,《續陰晴史》上, 323~325쪽. 〈東匪討錄〉에는 巡邊使 앞으로 보낸 '所願列錄' 23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續陰晴史》의 '原情列錄追到者' 24개조의 내용과 일치하되 그 중 1개조(軍錢春秋每戶一兩式 元定事)만이 누락되어 있다.

¹⁰⁷⁾ 이것은 농민군이 長城에 퇴거하여 전라감사 金鶴鎭에게 제시한 것이다. 鄭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71), 86쪽.

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폐정개혁안을 발표,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혁안은 애초부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완결된 일정불변의 어떤 조목들이 아니라 집약된 구호에서부터 몇 가지의 구체적인 조목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모두를 다 기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다고 느껴진 조목들이 먼저 제시되었을 것이다. 108) 그러므로 기록에 따라서 조목 수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조항들은 각 개혁안에서 동일한 조항들이 다수 있다.

여섯 가지 개혁안들을 내용별로 보면 1) 조세수취체제와 이에 관련된 탐관오리에 관한 조항 2) 무역·상업문제에 관한 조항 3) 기타 정치적 요구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의 '폐정개혁 요구사항 분류목록'은 여섯 가지개혁안에 나열된 요구조항들을 같은 내용의 것을 묶어 28개 조항으로 정리한 것이다.

폐정개혁 요구조항 분류목록109)

- (1) 조세수취체제에 관련된 조항
 - (가) 조세수취체제 일반에 관한 조항
 - 1) 軍政・還穀・田稅 三政은 通編의 예에 따라 준행할 것(續1) 조세를 명목도 없이 더하여 징수하는 것(東)
 - (나) 田政에 관한 요구조항
 - 2) 田稅는 전과 같이 할 것(全)
 - 3) 흉년의 白地정세를 없앨 것 (續2)각읍의 陳浮結은 영원히 면세할 것(續1)起田과 陳田을 막론하고 私田의 白地徵稅를 하지 말 것(日)
 - 4) 均田官이 폐단을 없앤다고 하면서 도리어 폐단을 낳는다 (日) 均田御使를 혁파할 것(大)

¹⁰⁸⁾ 한우근. 〈동학군의 폐정개혁안 검토〉(《역사학보》23집, 1964), 61쪽.

¹⁰⁹⁾ 각 항의 끝에 ()하여 적어 놓은 것은 각 요구조항이 있는 출전을 가리킨다. (日)은 東學軍通文 9개조가 실려 있는 《日本公使館記錄》, (東)은 湖南儒生原情 이 실려있는 〈東匪討錄〉, (全)은 湖南儒生原情 14개조가 실려 있는 〈全琫準判 決宣言書〉, (續1)은 全羅道儒生等原情 14개조가 실려 있는 《續陰晴史》上, (續2)는 原情列錄追到者 24개조가 실려 있는 《續陰晴史》下, (大)는 長城 改革案 13개조가 실려 있는 《大韓季年史》를 말한다.

均田官이 토지면적을 속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東) 均田官의 陳結 농간은 백성을 괴롭히는 바가 심대하므로 혁파할 것 (續2)

- 5) 각 宮房의 輪回結은 모두 혁파할 것(續1)
- 6) 어느 곳을 막론하고 洑를 쌓아 세금을 거두는 것을 革罷할 것(續2)
- (다) 軍政에 관한 요구조항
 - 7) 봄 가을 두차례의 戶役錢은 이전 例에 따라 戶마다 2兩씩으로 내려서 配定할 것(大)

洞布錢은 每戶당 春秋 二兩씩으로 정할 것(全)

軍錢을 때도 없이 과다 징수하는 것(東)

姻戚에게 부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東)

軍錢은 봄 가을 매호 당 1兩씩 원래대로 정할 것(續2)

8) 各項의 結錢收斂은 平均으로 分排하여 濫徵하지 말 것(大) 나라의 結稅는 더 보태지 말 것(全)

結米는 옛 大同의 예로 復古할 것(續2) 結上頭錢·考錢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혁파할 것(續2)

- (라) 還穀에 관한 요구조항
 - 9) 臥還은 그 본전을 뽑아버릴 것(日)

환곡의 본전을 회수하고도 이자를 독촉하는 것(東)

환곡은 옛 수령이 그 본전을 거둔 것은 다시 징수치 말 것(續1)

도내의 환곡은 옛 수령이 거둔 것을 다시 민간에서 거두지 말 것(全)

- 옛 수령이 이미 거둔 환곡은 다시 징수치 말 것(續2)
- 10) 賬庫는 一道 내 인민의 膏血인 바 곧 혁파할 것(續1)본 감영의 賬庫錢은 모두 인민의 膏血인 바 이를 영원히 혁파할 것(續2)
- 11) 오래된 私債를 官長을 끼고 억지로 받아내는 것을 일체 금할 것(續2)
- (마) 雜稅・雜役에 관한 요구조항
- 12) 浦口의 魚鹽稅는 혁과할 것(全)

각 浦의 魚鹽稅는 시행하지 말 것(續2)

鹽田의 市稅는 거두지 말 것(日)

각 浦口의 船主가 억지로 빼앗는 것을 금할 것(日)

- 13) 沿陸에 새로 생긴 각종 雜稅를 혁파할 것(續1)
- 14) 각읍의 官況은 원래 수요 외에 더하여 磨鍊하는 것을 모두 혁파할 것(續1)

烟戸雜役을 줄일 것(全)

각종 잡역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東)

烟戶雜役을 따로 나누어 加斂하는 것을 모두 혁파할 것(續2)

- (바) 轉運營에 관한 조항
- 15) 轉運營의 吏民에 대한 폐단을 혁파할 것(日)

轉運所를 혁파할 것(全)

轉運司를 혁파하고 이전과 같이 각 읍에서 상납케 할 것(大)

轉運營이 加斂하면서도 독촉하는 것(東)

轉運營의 漕運은 해당 읍으로부터 상납하는 예를 복고할 것(續2)

輪船上納 이후 每結당 加磨鍊米가 3, 4 斗나 되었는데 이를 혁파할 것(續1)

각 浦口의 船主가 억지로 빼앗는 일(日)

- (사) 貪官汚吏에 관한 요구조항
- 16) 貪官汚吏는 징계하여 쫓아낼 것(大)

탐관오리는 모두 쫓아낼 것(全)

임금의 총명을 가리어 賣官賣爵하고 국권을 조롱하는 자는 모두 쫓아낼 것(全)

각 관청의 관속들이 강제로 빼앗고 가혹하게 구는 것(東)

각읍의 貪官汚吏는 모두 쫓아낼 것(續1)

殘民을 침학하는 貪官汚吏는 일일이 쫓아낼 것(續2)

奸臣이 권력을 농단하여 國事가 날로 어그러지니 그 賣官하는 것을 懲治할 것(大)

17) 各邑의 守令이 그 地方에서 묘지를 쓰고 田庄을 사들이는 것을 嚴禁 할 것(大)

해당 邑의 지방관이 논을 사서 본읍에 묘지를 쓰는 것을 법에 따라 처분함 것(續2)

官長은 자기 경내에 묘지를 쓰지 않고 또 논을 매입하지 말 것(全) 각읍의 수령이 아래로 민인의 山地를 강제로 빼앗아 묘지를 훔치는 것을 금할 것(全)

세력을 가지고 남의 龍士를 빼앗은 자는 죽임으로써 징계할 것(續2)

18) 各邑의 포흠한 吏胥는 千金이상이면 죽이고 일족에게 물리지 말 것 (大)

公錢을 포흠한 것이 千金이면 殺身贖罪케 하고 族戚으로부터 거두지 말 것(續2)

19) 各邑 吏胥의 分房할 때 請錢을 받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뽑아 任房 할 것(大)

各邑의 東屬을 임명함에 있어 任債하는 일을 嚴禁할 것(續2) 각읍 아전의 任債는 모두 혁파할 것(續1) 각읍의 任房 名色은 모두 혁파할 것(續1)

- 20) 각읍 관아의 物種所入은 時價에 따라 取用할 것(續1) 각읍 관아의 物種所入은 時價에 따라 排用하고 常定例는 혁파할 것 (續2)
- 21) 京·營邸吏의 料米는 옛날 예에 따라 삭감할 것(續2)
- (2) 무역·상업문제에 관련된 조항
 - (가)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 침투에 관한 조항
 - 22) 다른 나라의 潛商이 쌀값을 올리는 것을 금할 것(日) 각 浦口에서 사사로이 쌀을 사고 파는 것을 엄금할 것(大) 각 浦口 潛商의 쌀거래를 엄금할 것(續2) 각 浦口의 貿米商을 모두 금단할 것(續1) 大同상납 전의 각 浦口에서의 潛商의 쌀거래를 금지할 것(全)

大同상납 선의 각 浦口에서의 潛商의 쌀거래들 금지할 것(全)

- 23) 各國 상인은 各 港口에서만 買賣케 하고 都城에 들어와 設市치 못하 게 하며 各處에서 任意로 行商치 못하게 할 것(大)
- (나) 국내 상업문제에 관한 조항
- 24) 각읍 市井의 각 물건에 대한 分錢收稅와 都賈 名色은 혁파할 것(續2) 각종 물건을 매점매석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할 것(日)
- 25) 각 市廛이 分錢收稅하는 것을 금할 것(日) 보부상의 폐단이 크니 이를 혁파할 것(大)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全) 보부상・雞帝의 작당했괘를 영원히 혁과할 것(續2)
- (3) 기타 요구조항
 - 26) 電報는 민간에 폐단이 심하므로 철폐할 것(續1) 電報局은 민간에 폐가 가장 심하므로 혁파할 것(續2)
 - 27) 東學人으로 무고하게 살륙되고 갇힌 자는 일일이 伸寃할 것(續2)
 - 28) 大院君이 국정에 관여한즉 民心은 얼마간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다 (大)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1) 조세수취제도 전반에 관하여110)

위에서 보듯이 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에서 절반 이상의 항목이 조세수취

¹¹⁰⁾ 이하의 폐정개혁안 분석은 정진상,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85~117쪽 참조.

체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탐관오리의 작폐에 관련되는 조항을 합치면 28개조항 중 21개가 조세수취체제에 관련된 요구조항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군의 봉기가 기본적으로 봉건적 모순에서 시작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요구조항 1)의 "軍政・還穀・田稅 三政은 通編의 예에 따라 준행할 것"은 수취체제 전반에 대한 농민군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분제를 매개로 한 봉건적 조세제도인 租庸調체계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으로 동 요하면서 새로이 정립된 조세체계는 전정・군정・환곡으로 표현되는 三政이 었다. 조선시대의 농민이 무엇보다도 봉건국가의 조세수취체계 속에서 수탈 의 대상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의 생활상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삼정문란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三政 문란에 대한 농민들의 직 접적인 생활상의 요구가 개혁안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 군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봉건적 수취제도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삼정제도 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세수취제도의 운영상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通編의 예에 따라 준행할 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복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농민군의 이러한 주장은 주관적으로는 당장의 생활상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봉건체제가 해체기에 들어서 고 그 유지의 근간의 하나인 조세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진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보면 그것은 봉건적 조세수취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봉건정부는 이러한 농민군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군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여 진압에 나섰던 것이다.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2)~6)은 田政에 관한 농민들의 요구조항들을 열거한 것이다. 조선 봉건국가는 토지세가 재정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후기에 이르러 전쟁과천재지변으로 국결이 줄어들고 정치적 기강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 土豪·관리·모리배의 토지 잠식으로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자, 농민들에게 과다한 징세를 하게 되는 각종 폐단이 수반되었다. 게다가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금납이 전세수취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데 따라 이를 둘러싼 폐 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농민군은 전세수납 방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제기 하여 '田稅는 전과 같이 할 일'을 요구조항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3)의 요구조항은 白地정세와 陳浮結에 관한 것이다. 陳田은 전국적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흉년으로 늘어난 陳田으로 말미암아 田地의 實結數는 원장부의 결수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위에 吏胥의 농간과 白地정세의 폐가 심했다. 진전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가 줄어들자 진전의 일부에 대해서는 白地정세가 부과되었고 때로는 '族徵', '里徵'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1111) 이에 농민군은 '각읍의 陳浮結은 영원히 면세할 것'을 주장하고 백지 정세에 반대하였다.

4)의 均田使에 관한 조항은 陳田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폐단을 지적한 것이었다. 균전사의 작폐에 관해서는 여러 개혁안에서 중복하여 나타날 만큼 그 폐단이 큰 것이었다. 고종 27년 말 고종의 특명으로 균전사에 임명된 金昌錫은 수년 간의 면세를 약속하고 流亡民으로 하여금 진전을 起墾케 하고는 약속과는 달리 추수시에 정세를 강행하였으며, 또 다시 진폐된 田畓에 대해서는 그 전년의 장부에 의거하여 정세하기도 하였다.112) 이에 농민군은 관직을 이용한 불법정수에 저항하여 '均田御使를 혁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5)는 宮房輪廻結의 폐지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各 宮房의 導掌들은 宮房權勢에 의탁하여 농민을 침학하거나 舊災라고 모칭하여 公稅를 납부하지 않고 私腹을 채우는 일이 많았다. 宮房田은 有土, 無土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收斂이 일반 민결에서와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궁방의 權勢에 의탁한 導掌・吏胥輩의 작간・침학이 한층 더한 것이었다.113) 그리하여 농민군은 '각 宮房 輪回結은 모두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6)은 수리시설에 관한 농민군의 요구조항이다. 堤堰이나 洑는 일반적으로 관의 관리하에 있어 그 修築에는 흔히 농민이 동원되었다. 농민의 동원에 있 어서는 防水用의 防築과 아울러 다수의 농민이 요역을 감당해야 했다. 제언

¹¹¹⁾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서울대출판부, 1971), 100쪽.

¹¹²⁾ 黃 玹, 《梅泉野錄》(국사편찬위원회, 1971), 109쪽.

¹¹³⁾ 한우근, 앞의 책, 116쪽.

이나 보에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민폐는 역시 水稅의 남장에 있었다. 즉 새로 洑를 쌓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농민으로부터 수세를 남장하는 처사가 성행되었다. 고부민란의 발단이 고부군수 趙秉甲의 萬石洑 新築이었다는 점¹¹⁴⁾은 築洑와 水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7)과 8)은 軍政에 관한 농민의 요구이다. 7)의 요구조항은 軍布의 경감에 관한 것이다. 1750년의 균역법은 良丁의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하고, 대원군집정시에는 양민에게만 부과시키는 군포를 양반에게도 같이 부과시키자는취지에서 戶布制를 실시하여 班常을 가리지 않고 1丁에 대하여 1년에 2냥씩의 동포전을 징수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포전의 실시는 도리어 구제보다도 더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농민은 한편에서는 법규의 준행을 호소함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세제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여기서도 농민군은 봉건적 조세인 군역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군포를 징수하되 국법에 따라 '洞布錢은 每戶당 春秋 二兩씩으로 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8)의 조항은 結米에 관한 것이다. 1750년 균역법의 실시에 따라 군포 2필을 1필로 감하는 대신 그 보충책으로 토지에 結米 또는 結錢을 징수케 하였다. 이러한 결미・결전의 가렴 또한 심하였다. 田結에 대한 기본수세액은 그리 과다한 것이 아니었으나, 여기에 부가되는 각종각색의 結役이 허다하여 결당 수세액은 높아지기 마련이었다. 田結에 대한 총세액으로 결산된 것이소위 結價인데 여기에는 원래의 田稅・大同・三手米稅・結錢은 물론이요 소위 각종 수렴이 첨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커졌던 것이다.115) 농민군이 '各項의 結錢收斂은 平均分排하여 濫徵하지 않을 일'이나 '結米는 옛 大同의 예로復古할 일'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도 농민군은 봉건적 조세제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舊例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14) 〈}全琫準供草〉初招問目(《동학란기록》하), 522쪽.

¹¹⁵⁾ 한우근, 앞의 책, 135쪽.

(4) 환곡에 관한 요구조항

9)~11)은 還穀제도에 관련된 요구조항이다. 還穀은 본래 빈민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대부제도인데 조선 후기에는 그 성격이 변질되어 소위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환곡의 폐가 가장 심하였다고 할 정도였다. 이것은 지방관의 고리대업의 수단이 되었으며, 지방관은 帳簿위조에 의한 불법징수, 이중징수, 이자율의 인상 등으로 농민을 항상적 채무자로 몰아간 것이었다. 환곡을 통한 농간에는 군현의 수령 뿐만 아니라 각 도의 감사도 개입하고 있었다. 환곡 시행에 따르는 폐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환곡을 分給・收斂할때 폐단이 따랐으며 환곡 逋欠의 폐도 계속되었다. 가장 심각한 폐단은 元還穀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116) 게다가 수령이 교체되는 경우 기왕의 逋欠으로 인한 허부화된 원곡을 채우기 위해 다시 농민에게 징수하였다. 농민군이 환곡의 폐단 중에서 특히 '臥還은 그 본전을 뽑아 버릴 것'이라든지 '환곡은 옛 수령이 그 본전을 거둔 것은 다시 징수치 말 것'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이와 같이 농민군의 환곡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역시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고 관리의 부정을 없 애자는 것이었다.

10)은 社倉 혹은 賬庫를 철폐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고종 4년(1867)에는 환곡의 폐를 시정하기 위해 社倉制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社倉節目에 의하여 먼저 社倉을 각 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에 설치하고 근실하고 부유한 자를 택하여 社首로 삼아 이를 관장토록 하되 각 동의 근간인으로 동장을 삼아 사수의 지시를 받아 감독케 하였다.117) 그러나 据納者에 대한 감독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流亡者에 대해서는 동민에게 공동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래의 白徵과 다름없었다. 또한 사창미까지도 환곡과 같이 중외의 경비보충의 주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고리대금업으로 이용되자 농민에게는 이름을 달리한 또 하나의 수탈기구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새로 생긴 社倉 혹은 賬庫를 혁파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¹¹⁶⁾ 위의 책, 157쪽.

¹¹⁷⁾ 위의 책, 164쪽.

11)은 고리채에 관한 조항이다.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환곡의 고리대화로 인해 사적인 고리대 행위는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지방의 영읍에서는 庫債라 하여 均役・賑恤 등의 庫錢을 그 관리자가 유용하여 빌려준 다음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흔했다.118) 고리대 행위의 자행 중에서도 공금을 유용하여 이를 대부하거나 또는 公債를 빙자하여 사채를 勒徵하는 폐가 매우 심했다. 이와 같이 사채가 대부분 공금을 이용한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받아낼 때에는 당연히 수령의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군은 '오래된 私債를 官長을 끼고 억지로 받아 내는 것을 일체 금할일'이라고 하여 사채를 강제로 대부하거나 억지로 빼앗는 것을 금지할 것을요구하였던 것이다.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12)의 조항은 魚鹽稅의 혁과를 요구하고 있다. 어염세는 원래 균역법 실시에 따르는 보충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물주를 배제하고 세수의 증대를 꾀한 균역법 실시의 의도와는 달리 번잡한 稅制의 결함때문에 도리어 영세 魚鹽民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웠으며 게다가 영세 어염민의 도산에따라 隣徵・族徵이 자행되고 또 白徵의 폐단마저도 심하였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어장・염분은 다시 내수사를 위시한 各宮・各司 내지 향반・토호들에게 다시 점탈되어 私稅의 남장・첩정의 폐가 어염민을 이산하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119) 게다가 개항 후 외국 어민, 특히 일본어민의 침투가 보다절박하게 한국의 어민을 위협하게 되었다. 봉건국가의 조세와 일본어민의 침투로 이중의 압박을 받은 영세 어민은 어염세 자체의 혁과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농민군은 이들의 요구를 개혁안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군에는 연안의 영세 어염민도 농민군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은 無名雜稅의 혁파에 관한 조항이다. 沿江에 있어서는 흔히 어염선에 대하여 잡세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대원군 집정시에 신설한

¹¹⁸⁾ 위의 책, 177쪽.

¹¹⁹⁾ 위의 책, 145~146쪽.

都城門稅, 한강유역에 있어서 水上·水下의 무명잡세, 각 營邑에서의 무명잡세 등이 있었다. [20] 이 같은 沿江·場市에 있어서의 신설세는 각 衙門·각 宮房에서의 정색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농민군은 이와 같이 각 아문·궁방·지방관의 탐학에 의해 부과되는 봉건적인 무명잡세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14)는 각읍의 官況과 烟戶雜役에 관한 요구조항이다. 官況, 즉 지방관원의 봉록은 원래 국법121)으로 정하기로는 大同경비 중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따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각 읍에서는 添徵하는 것이 통례로되어 있었다. 또한 每戶에 부과되는 요역부담을 烟戶雜役 혹은 烟役이라 불렀는데 여기에는 애초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서 수령의 탐학이 개재될 여지가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각읍의 官況은 원래 수요 외에 더하여 磨鍊하는 것을 모두 혁파할 것'과 '烟戶雜役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6) 전운영에 관한 조항

폐정개혁 분류목록의 15)는 전운영에 관한 농민들의 요구조항을 열거한 것이다. 개항 이후 과거 목선에 의한 선운 대신 기선에 의한 공물 운송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맡은 관청이 轉運營이었다. 전운영의 폐단으로는 우선 정부의 기선 구입에 따르는 경비로 선가미를 따로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농민의세미 부과는 가중되었다. 또한 전운사가 선운을 관장한 이후로 田稅・大同米를 위시하여 船價米・三手米・永宗米 등 농민과 선상에게 부과되는 일체의稅米를 督徵・수송하는 책임과 권력을 갖고, 그 밑에 監官・船主 등의 횡포와 弄奸・逋欠의 여지가 많았다.122) 위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군이제시한 모든 개혁안이 전운영 혁과를 거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개혁안의 맨 앞에 나타나곤 하였던 점은 전운영에 대한 농민군의 怨聲을 집작할수 있게 한다. 전운영에서의 수탈은 국가의 정세기구에 있어서의 중간수탈이

¹²⁰⁾ 위의 책, 153쪽.

^{121)《}續大典》戶典 外官供給條.

¹²²⁾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상)—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관련하여—〉 (《아세아연구》7-3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36쪽.

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라도 전운사 趙翔永은 당시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중간수탈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23] 그래서 농민 전쟁을 관찰한 한 유생은 "호남의 난(농민전쟁)은 趙弼永으로부터 시작되어趙秉甲을 거쳐 李容兌(泰)로 끝났다." [24]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운영 혁파의 문제는 이전의 민란 단계에서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5) 과거의 민란은 개별 군현 단위의 邑政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민란의 전개도 일개 군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적으로 전개되었던 반면에, 전운영의 문제는 적어도 전라도의 여러 군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 농민들을 군현 단위에서 끌어내어 전국적 규모로 단결하게 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공사관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민란의 수령은 앞서 비밀히 58주[53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목적은 다만 한 郡의 利害에 그치지 않고 먼저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개혁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兵糧은 우선 軍倉의 稅穀을 빼앗아 이에 충당한다고 한다."[126]

농민군은 전운영 문제를 통해 "한 군의 利害에 그치지 않고" 공통의 관심 사를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1차 농민전쟁 중에 농민군은 실력으로 전운 사를 공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127)

^{123) &}quot;趙弼永이… 갖은 명목을 교묘히 붙여 가렴하니 세납선여전이 100만 꿰미나 되었다. 국왕은 그를 재주있다고 여겨 3년이 되었어도 교체하지 않았다. 재물로 소론 갑부가 되었다…."《梅泉野錄》, 87쪽.

¹²⁴⁾ 崔永年, 〈東徒問辨〉(《동학란기록》상), 158쪽,

¹²⁵⁾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3~124쪽 참조.

¹²⁶⁾ 巴溪生, 〈全羅道古阜民擾〉(《주한일본공사관기록》1), 56쪽,

¹²⁷⁾ 주한일본공사관의 보고에는 "沃溝의 群山과 靈光의 法聖補에 주둔하고 있는 동학도들이 함께 轉運船을 공격하여 모두 쫓아냈으므로 운반할 길이 끊겼다. 이 民擾는 다만 백성들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諸邑의 吏胥들도 轉運하는 데 피폐하였으므로 죽을 힘을 다해 轉運을 폐지하려고 백성들과 함께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였다"라고 하여 농민군의 전운사 공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23쪽.

(7) 탐관오리에 관한 요구조항

위에서 살펴 본 田政・軍政・還穀 및 雜稅에 관한 폐단의 매개고리는 기 실 거의 모두가 지방관리. 즉 守습과 吏胥의 불법·협잡·탐학이었다. 그리 하여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주요한 공격대상은 貪官汚吏이며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매관매작을 행하여 국권을 조롱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전봉 준은 "각읍의 守宰는 上納을 칭하고 혹 結卜을 加斂하여 戶役을 횡탈한다. 조금 부유한 백성이 있으면 공연히 죄로 엮어 재산를 늑탈하고 토지를 횡탈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28)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봉기했으며 그 구체적인 공격목표를 전라도의 탐학한 관리의 일소와 중앙의 賣爵權臣의 배제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농민군이 무장에 서 기포할 때 발표한 倡義文에서도 관료층의 부패가 국가의 위망을 초래하 며 만민을 도탄의 극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의 위망을 염려치 않고 오로지 '肥己潤家之計'를 꾀하고 있는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는 탐학이야말로 농민군의 주요한 공격대상이었던 것이다.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개혁안에서 중복하여 貪官汚吏의 징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농민군의 공격의 목표를 잘 알 수 있다. 또 농민군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실력으로 탐관오리를 징치하기도 하였다.

수취체제의 문란과 직접 관련되는 조항 외에도 농민군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守令・吏胥의 탐학행위가 여러 가지로 저질러지고 있었다. 17)은 守令이인민의 토지와 묘지를 점탈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英朝朝 이후로 수령이民家나 民塚을 점탈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 왔지만, 수령이나 관찰사가 그들의 권세를 믿고 인민의 토지나 묘지를 점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宮房이나 班家에서 묘지의 경계를 무시하고 이를 광점하는 경우 민답이 이에 몰입되는 수도 있었다.129) 농민군은 이와 같이 지방관이 그 권세로써 民田을점탈하고 묘지를 함부로 발굴하는 불법을 규탄하고 '各邑 守令이 자기 地方에서 田庄을 사들이는 것을 嚴禁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128) 〈}전봉준공초〉, 재초문목(《동학란기록》하), 532쪽.

^{129) 《}日省錄》, 高宗 7년 9월 6일조 ; 한우근, 앞의 책, 183쪽.

18)의 조항은 公金의 유용에 관한 것이다. 공금의 逋欠・犯用이 삼정을 여러모로 더욱 어지럽게 하였기에 농민군은 逋吏 자체를 규탄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후기에는 경외를 막론하고 吏胥의 民에 대한 주구가 심하였다. 130) 결세는 물론 각종의 상납까지도 모두 포흠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대동・저치미 등을 포함한 환곡에 있어서 그 폐가 가장 심하였다. 이러한 이서의 逋欠을보충하기 위해서는 관부에서의 감독이 없을 수도 없어서 그것이 바로 民斂・族徵의 폐단을 자아내었다. 농민군에 '各邑의 포흠한 吏胥는 千金이상이면 죽이고 族徵하지말 것'을 주장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19)는 任債에 관한 요구조항이다. 각 읍에서 새로 吏任을 선임할 때 차임되는 衙前은 금전을 상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任債라고 했다. 그것은 또 비단 衙前 즉 吏任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에 따라鄉任(座首·別監)이나 校任(향교의 役員)·面任 등에까지도 예사로 되어 있었다. 탐학한 수령은 관례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기가 일쑤여서 이러한 뜻에서는 흔히 任賂라 하였다.131) 그러나 이같은 임채는 결국은 吏胥 등이 평민을침탈하는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군은 '各邑의 吏屬을 임명함에 있어 任債하는 일을 嚴禁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20)은 각읍 관아의 잡비를 충당하는 데서 나타나는 징렴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관아에서 사용하는 物種은 官庫와 임시물자를 다루는 民庫가 있어 각각 민간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관아에서는 官需를 구입할 때 시가에 좇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공정가격이 낮게 정해져 시가보다도 헐값으로 강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또한 관에서 권력을 의탁하여 가격조작에 의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132) 게다가 당시는 만성적인 인플레 상태에 있어 저가격에 의한 물자수용은 수용되는 측에 큰 손실을 가져 왔다. 그리하여 농민과 영세상인의 생활은 더욱 큰 핍박을 받았다. 농민군이 '각읍 관아

¹³⁰⁾ 吏胥輩가 逋欠을 자행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일정한 봉급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위에 그들은 신분지위의 향상을 좀체로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흔히 營邑의 各庫 色吏에 차출되어 여기서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어 있었다. 한우근, 앞의 책, 188쪽.

¹³¹⁾ 한우근, 앞의 책, 195쪽.

¹³²⁾ 위의 책, 201쪽.

의 物種所入은 時價에 따라 取用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인플레 하에서의 생활 방위였으며, 관리의 부정과 수탈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 것이다.

21)은 京・營邸吏의 폐단에 관한 것이다. 京・營邸吏는 경저리, 영저리 등을 말하는데 그들은 공납문첩을 전관하여 왔을 뿐 아니라 대동법 실시 이후로는 공납청부업자의 구실도 하게 되었다. 경저리・영저리 役價米는 법정세외에 邑用으로 읍민에게서 添徵되는 명색의 하나로 이른바 계판에 드는 것이었다.133) 이들 邸吏는 흔히 환곡 등 公穀을 유용하여 고리대업을 하기도하고, 邸吏 役價를 먼저 환곡의 利殖으로 받아 감으로써 결국은 읍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농민군은 이러한 京・營邸吏의 役價米를 첨정하지 말고 구례에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2) 무역·상업 문제에 대하여

(1)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하여

농민전쟁에서 제기되었던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략 양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농민군이 제1차 농민전쟁 시기부터 '斥倭洋倡義'・'逐滅倭夷'의 기치를 내건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그 원인이 있었다.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을 통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일본의 침탈에 반대한 것은 미곡의 유출과 외국상인의 내지행상이었다.

폐정개혁 분류목록 22)는 일본상인의 미곡 유출에 대한 농민군의 요구를 담고 있다. 농민군이 제시한 모든 개혁안에서 미곡의 국외 유출문제를 거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일본으로 의 미곡 유출이 날로 심하여지자 지방관들은 방곡령으로 이를 막아 보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공사의 항의로 철회하게 되고 곡물유출은 늘어가기 만 하였다. 이같은 곡물유출로 종래의 국내 곡물수급구조는 위협받았으며, 곡물의 대일 수출 증대에 따른 곡물 상품화의 진전과 곡가의 등귀는 직접적

^{133) 《}日省錄》, 고종 15년 4월 4일조 ; 한우근, 앞의 책, 202쪽.

으로 임노동자층과 빈농의 생계를 압박하여 광범한 농민층의 저항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134) 농민층도 곡물의 상품화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상품화의 이익은 자가소비 부분까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탈의 다른 형식에 불과하였다. 농민이 잉여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 조선의 곡물상인과 일본상인, 그리고 봉건지배계급이 농민의 잉여를 착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35) '각 浦口 潛商의 쌀거래를 엄금할 것'을 요구조항으로 내건 것은 미곡의 상품화 자체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곡의 유통과정에서 농민층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요구였다.

폐정개혁안 분류목록의 23)은 외국상인의 내지행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항 후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청국상인과 일본상인은 서울시장에 침투하여 수입품만이 아니라 市廛상인의 전매상품인 백목면, 명태 등의국내품까지 취급하였다. 이러한 일본상인의 내지행상은 곡물의 상품화를 가속화하며 가격의 등귀를 유발하여 농촌의 임노동자층과 빈농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상인의 내지행상은 농민적 상품교환의 장으로서의 농촌 場市에 타격을 가하였다.136)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농민군은 '各國人상업은 各港口에서만 買賣케 하고 都城에 들어와 設市치 못하게 하며 各處에서 任意로 行商치 못하게 할 것'을 구체적인 요구로 내세웠던 것이다. 농민군은 수출시장과 연관되어 있던 미곡의 상품화 자체를 반대했다기 보다는137) 미곡 매매를 농촌 장시의 시장질서 내부로 한정함으로써 場市를 중심

¹³⁴⁾ 하원호, 〈곡물의 대일유출과 농민층의 저항〉(《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 비평사, 1991), 273쪽.

¹³⁵⁾ 하원호, 위의 글, 269쪽.

¹³⁶⁾ 吉野誠、〈李朝末期にお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朝鮮史研究會, 1978), 110쪽.

¹³⁷⁾ 전봉준은 체포 후 법정 신문에서 "그러면 일본군대와 경성에 머무르는 외국인 들을 모조리 구축하려고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는 단지 통상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군대를 거느리고서 경성에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아했다"라고 하여 외국과의 무역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전제하고 있었다. 〈全琫準供草〉(《동학관기록》하), 538쪽.

으로 한 재래의 시장구조의 파괴를 막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인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138] 여기에는 소생산자로서의 농민과 소상인의 이해관계가 표현되고 있다.

(2) 국내상업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침투는 직접적으로 조선 농민을 압박하기도 하였지만 국내상인을 매개로 하여 조선민중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폐정개혁안 분류목록 24)는 都賈혁파에 대한 농민군의 요구이다. 일반적으 로 객주・여각은 도매상이라는 의미에서 널리 都賈라고도 일컬어졌다. 또한 개항후 개항장에서의 무역은 개항장 객주라는 새로운 상인층을 출혂시켰다. 개항장에서 자유상인(상회)이 대두하여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객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정부족에 허덕이던 봉건정부로서는 특허독점적 인 객주·여각의 체제를 더욱 통제하여 세입의 확보를 꾀하려 하였다.139) 객 주는 그 독점적인 특권에 의하여 대소 상민을 탐학하였다. 또한 개항장에 있 어서는 물론 미개항장에 있어서도 객주 · 여각은 일본 상인의 매매를 중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중에 그들의 미곡매출을 알선하는 역할도 하고 또 그들의 상품행상인, 즉 보부상에게 연계시켜 주는 기능도 하였다. 객주ㆍ여 각은 일본인의 미곡매출과 상품매각에 중간매개적 역할을 하여 결국 미곡을 유출시킴으로써 농민군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각읍 市井의 각 물건에 대한 分錢收稅와 都賈 名色은 혁파할 것'이라는 농민군의 주장은 봉 건정부와 이에 결탁한 특권상인들의 分錢收稅를 철폐하고 봉건적 특권상인 제도를 철폐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봉건적 상업정책에서 소외되어 독점적 특권 상인의 지배아래 이윤을 수탈당하던 소상인과 소상품생산자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나왔던 것이다. 이는 봉건적 상업체계를 극복하고 소상인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폐정개혁안 분류목록 25)는 市廛과 褓負商의 폐단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서울의 시전과 지방의 보부

¹³⁸⁾ 吉野誠, 앞의 글, 114쪽.

¹³⁹⁾ 한우근, 앞의 글(하), 155쪽.

상은 상업활동의 핵심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각기 길드적인 조직을 가지고 관부에 대하여 소정의 역(납세)을 지는 대가로 상품 독점매매의 특권을 차지 하여 정부와 상호 보상관계를 맺고 있었다. 개항 이후 일본을 위시한 제국주 의세력의 경제적 침투로 이들 상인들은 타격을 받았지만, 봉건정부의 봉건적 특권상인체제 강화정책으로 모순이 민중에 전가되었다.

원래 상업기구인 시전체제는 조선 후기부터 한편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과다한 收稅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 세도가의 豪奴 등에 의한 任意 亂廛행위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게다가 개항으로 청국상인과 일본상인이 서울에점포를 개설함으로써 더욱 약화되었다. [40] 난전이 치성하고 외국상인이 침투해 들어오자 시전상인은 소상인에 대한 분전수세를 강화하려 하였기 때문에농민군은 '각 市廛이 分錢收稅하는 일을 금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보부상단은 1881년 이후로 1885년에 이르는 동안에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아 특권적인 행상 길드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하여 일정의 납세와 충성의 의무를 져서 이를테면 완전한 어용집단이 되었다. 141) 행상길드 조직으로 장시를 지배하게 된 보부상의 독점적 특권은 일반 상인의 자유로운상거래를 배제했으며, 그들이 객주여각을 통하여 외래 상품을 구득하여 이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도 맡았다. 보부상은 특권 어용상인으로장시를 지배하고 상리를 농단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상인 — 객주 · 여각 — 보부상의 루트를 통하여 외국의 경제적 침투를 가능케 하는 말단조직의 기능을지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보부상의 특권적 행위는 소상인과 농민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충성하는 집단으로서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과는 원래적으로 적대관계에 서게 되었다. 실제로 농민군토벌의 巡邊使는 보부상 을 조발하여 전선을 수호케 하고 정탐의 역할 등을 맡겼다.¹⁴²⁾ 첫 전투인 황

¹⁴⁰⁾ 한우근, 〈개국후 일본인의 한국침투〉(《동아문화》제1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 소, 1963) 참조.

¹⁴¹⁾ 한우근, 앞의 글(하)(1964), 173쪽.

^{142)《}續陰晴史》上, 307쪽.

토현 전투에서 보부상단이 농민군의 적대 편에 섰으며, 갑오 5월에 전라도 금산군 지방의 농민군은 보부상대에 의하여 격파당하기도 하였다. 143) 농민군 또한 보부상을 적대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44) 또한 관군이 전주성을 회복할 때에도 보부상단이 정부군과 합세하였다. 145)

3) 기타 정치적 요구조항

사회경제적 요구조항 이외에 폐정개혁안에 나타나는 농민군의 요구사항으로는 전보국의 혁파, 동학인의 신원, 대원군의 섭정 요구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폐정개혁 분류목록 26)은 전보국의 혁파를 주장한 것이다. 개항 이후 일본인이 설치한 전보국의 폐단은 전국 각지를 전선으로 연결하면서 세운 전신주가 농지를 침탈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전신, 전화는 농민들에게는 토지 침탈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을 것이다.

27)의 조항은 동학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은 농민들의 신원을 요구한 조항이다. 동학은 정부에서 금했기 때문에 지방관리들은 동학교도들에 대해 온갖 협박과 박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수탈대상으로 지목되면 동학인으로 몰아 부치기도 하였다. 고부민란 후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 군민들에 대해 행 한 학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8)의 요구조항은 농민군의 권력구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 제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주로 봉건지배층, 즉 민씨정권의 타도를 일차적인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제1차 농민전쟁 단계에서는 농민군은 민씨정권을 타도한 후 대원군의 집정을 막연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권력구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농민군은 4월 20일경 招討使에게 보낸 湖南儒生原情書에서 "일이 이지경에 이르른즉 억조창생이 마음을 같이 하고 팔도의 백성이 뜻을 모아 위로는 國太公

^{1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쪽.

¹⁴⁴⁾ 보부상들은 대체로 동학당들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당들이 부 상들만 보면 죽이기 때문인데, 그 사이에 살상을 당한 (보부상의)수효가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1,5쪽).

^{14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3쪽.

을 받들어 攝政을 맡겨 부자의 인륜과 군신의 의를 온전히 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함으로써 宗廟·社稷을 다시금 보존할 것을 죽기로 맹서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¹⁴⁶⁾라고 하였으며, 4월 18일 羅州公兄에게 보낸 通文에서도 폐정개혁을 "國太公을 받들어 맡김"으로써 폐정개혁을 할 수 있다고설득하고 있다. 또 전주에서 화약 교섭중이던 5월 4일 招討使에게 보낸 所志에서는 "太公을 받들어 섭정을 맡기자는 것은 그 이치가 심히 당연하거늘 어찌하여 반역이라 일컫고 살해하는가"¹⁴⁷⁾라고 하여 대원군 정권의 성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상에서 제1차 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구체적 요구조항들을 검토하였다. 폐정개혁안에 나타난 조세수취체제에 관한 농민군의 요구는 임술민란 단계의 농민들의 요구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었다. 임술민란에서도 농민군의 주된 요구는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문란의 폐단을 시정할 것과 수세담당자인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조세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48] 이것은 동학농민전쟁 시기의봉건적 모순의 기본구조가 임술년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이 시기에는 그 모순이 더욱 첨예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역적인 봉기의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할 수 있다.

농민군이 제기한 폐정개혁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민군이 제1차 농민 전쟁에 봉기할 때 '四大名義'와 '檄文'에서 내세운 민씨정권의 타도나 사회신 분제의 폐지 등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요구를 하지 않고, 당시 봉건정 부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한 봉건적 가렴주구의 폐정의 개혁만을 요구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 에서 열거한 개혁안이 전쟁의 적대편에 있다고 인식한 대상, 즉 봉건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49)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천

^{146) 〈}東匪討錄〉(《韓國學報》3), 259~60쪽;《오하기문》, 89쪽.

^{147)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207쪽.

¹⁴⁸⁾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동녘, 1988), 62~69쪽 참조.

¹⁴⁹⁾ 개혁안의 수취인은 巡邊使, 觀察使 등이었다.

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강령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농민전쟁에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든 계층에게 직접적인 생활상의 요구로 나타나는 최소강령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정개혁안의 분석은 농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지만,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자체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농민군은 당시의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에서 파생된 여러 폐단들을 들어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봉건적 수취체제 그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를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通編의 예'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데서 보이듯이 봉건적 수취제도의 정상화라는 외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점은 아직 농민군이 봉건정부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던 전쟁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의식과 행동의 미숙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곳을 막론하고 築狀 收稅하는 것을 革罷할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농민군은 봉건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즉자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삼정문란의 책임을 이전의 민란단계에서는 각 군현단위의 守令·東胥層에 돌리고 있었던 데 대하여, 농민전쟁의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민페의 근본은 東胥들의 逋欠에 있고, 東逋는 貪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탐관은 집권자들의 탐람에 있다"¹⁵⁰⁾고 하여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집권세력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안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즉자적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 대중의 의식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폐정개혁안에서 나타나는 농민군의 경제적 지향은 봉건적 조세수취 체제의 모순이 파생시킨 여러 폐단들을 제거함으로써 소농민 경제의 자립성 을 획득 내지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혁안 자체는 다분

^{150) 〈}東學軍通文〉(《나라사랑》15, 외솔회, 1974), 136~137쪽.

히 봉건적 지배질서를 근원에서 부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요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당시 봉건체제가 봉건질서 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에 처해 있었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도 봉건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농민군의 주관적인 요구가 설사 봉건체제의 개혁을 통한구질서의 복귀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된다면 조선왕조의 지배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 때문에 봉건정부는 그러한 농민군의 요구를 봉건체제에 대한전면적인 도전으로 받아 들여 농민군의 진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무역·상업문제에 대한 농민군의 요구조항들은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의 경제적 침투와 이로 인해 변화된 상업구조에 대한 대응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발전되어 오던 상품화폐경제는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자본제 상품의 수입과곡물의 유출을 통한 제국주의 침탈은 먼저 유통부문을 재편시키며 생산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봉건지배계급도 이에 편승하여 수탈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임술민란 단계에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봉기한 농민군의 상품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물가 앙등의 원인이 되어 농민들을 핍박하고 있는 미곡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상인들의 내지행상으로 인한 상권 확대를 금지할 것 둘째, 국내의 특권적 상인층(객주, 선주, 보부상 등)의활동을 제약할 것 등이다.

첫번째와 관련하여 농민들은 미곡의 상품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요컨대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미곡수탈이 미곡수출로 귀결되고 있는 사실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 미곡상품화의 경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개항 이후 미곡의 일본유출 경로는 지방관· 支胥가 농민으로부터 수탈한 미곡이 각 포구의 객주를 거쳐 일본인 미곡상을 통해 유출되거나 혹은 보부상이 장시에서 매입한 미곡이 객주를 경유하여 일본인 미곡상을 통해 유출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러한 경로에 의한

미곡의 상품화는 가격조작에 의해 농민의 불이익을 증대시켰으며 농민경영의 발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농민군은 제국주의 침투로 변화된 이러한 미곡유통구조를 개편하려는 지향을 가졌던 것이다.

두번째로 국내독점상인은 제국주의의 경제침투에 대응하여 더욱 독점이 강화되어 반동화되는 길을 걸었다. 조선정부는 전기적 특권상인들을 매개로 하여 제국주의 침투에 대응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세 상인층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일반 농민들도 독점상인의 매점매석으로 생활에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군은 봉건적 상업구조의 철폐를 요구하고 소생산자적 상품유통의 길을 지향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부상 조직에도 들어가지 못한 농촌의 영세소상인층이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동학농민전쟁은 제국주의 세력과 조선정부 및 독점상인의 이중적인 침탈이라는 모순구조 속에서 허덕이던 농민들이 소상인, 소상품생산자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세력과 봉건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농민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반제·반봉건의 투쟁목표를 명확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투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농민군 스스로의 힘으로 구상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51] 농민군은 대원군의 섭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데서 보이듯이 아직 기존의 정치구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제1차 농민전쟁의 단계에서 농민군은 경제적으로는 봉건적 억압과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소상품생산자로서의 자립·발전을 지향하였지만, 그러한 경제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권력 구상을 형성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집강소 시기의 통치경험과 제2차 농민전쟁 과정을 통해 미구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鄭診相〉

¹⁵¹⁾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제1차 농민전쟁의 봉기에 대하여 "무슨 의견으로 거병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한 번 세상을 건지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는 데 이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全琫準供草〉, 재초문목(《동학란기록》하), 534쪽.